

제424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16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 상정된 안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3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 4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11주기,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의 그날 참상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고 또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슬픔이 여전합니다. 오늘 하루는 세월호에 대한 비극을, 그 참사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탄핵 청문회는 아시다시피 F4 경제 수장들이 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글로벌 경제가 시시각각 위기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우리 경제 수장들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청문회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적어도 5시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주 대상자에 대하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가담하였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상설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 131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이러한 탄

핵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데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잠시 탄핵소추안 요지에 대해서 짧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소추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법상 행위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돋거나 묵인 또는 방조하였고, 비상계엄이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입니다. 소위 내란 동조 의혹입니다. 이것은 헌법 77조 1항, 3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헌법 제87조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는 조항, 형법 제87조 3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소추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과 대법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27일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 제49조,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등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 헌법재판소법 67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피소추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소 추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헌법 제66조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위반하였다 하여 탄핵소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장경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법사위에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의견 잘 청취하고 함께 배우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청문회에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이렇게 참고인을 뒤늦게 추가 신청하는 것은 통상 규칙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참고인 신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당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중인·참고인 신청에 대한 반대입장을 이미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의결을 통해서 이미 결정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굳이 1명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 특히 중요 중인도 아닌 상황에서 참고인을 이렇게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위원장 정청래** 보통 중인·참고인 같은 경우 송달 관계로 7일 전에 의결을 합니다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출석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당일 날 의결을 통해서 중인·참고인 출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 또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있으므로 이것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

## 2.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10시12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 중 현재 증인 8인, 참고인 2인이 출석하였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일정으로 인해 오후에 출석하기로 위원장이 허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현 증인은 공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인사하기 전에 잠깐만 질문 좀 하나……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정청래 인사하세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행입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우리 행정실 직원은, 김선택 교수님이 화면에서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임지봉 교수님 옆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국회증감법 제15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최상목 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장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상목**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증인 최상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 이주호

증인 박현수

증인 이완규

증인 김석우

○위원장 정청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민주당 한 분씩, 될 수 있으면 간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유상범 위원 희망한 사람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은 송석준 위원님이 하시고 민주당은 박범계 간사님께서 3분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시간 안에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시간 외에하시는 부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누구?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송석준 위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예.

○송석준 위원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처음으로 준 것 처음입니다, 법사위 시작한 이래. 너무 놀라운데, 제가 사실은 무슨 뭐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좀 단순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오늘 법사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관한 청문회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탄핵소추안이 오늘로써, 이번으로써 무려 30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최고 막강한 권한이,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아마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후에 써야 될 극단적인 수단이 바로 탄핵 아닙니까. 정청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위원장 정청래 3분 안에 마쳐 주세요.

○송석준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3분 안에 마쳐 주시라고요.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3분 안에 마쳐 주시라고요.

○송석준 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수많은 탄핵소추안 중에, 나는 기본적으로 다 청문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또 자꾸 딴짓하시네.

위원장님, 탄핵소추안 중에 어떤 건 청문회를 하고 어떤 건 청문회를 안 해요. 대체 그 기준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다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송석준 위원 아니, 3분은 제 시간이니까.

○위원장 정청래 다 마치고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릴게요.

○송석준 위원 일괄 답변하시려고?

○위원장 정청래 예.

○송석준 위원 제가 지금 일문일답을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왜 그런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사위원장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고 또 위원장님께…… 방식은 제가 요청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국회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예.

○송석준 위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문일답 한다는 것을 위원장님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유상범 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없으니까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마쳐 주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조문을 되게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위원장님한테는 일문일답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저는 처음 들어 봐요.

○위원장 정청래 마쳐 주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그것 조문 좀 정확히 알려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 기억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예.

○송석준 위원 아주 성실하고 아주 납득이 갈 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 하셨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했을 때 그 짧은 기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최상목 증인? 아홉 번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왜 거기다 얘기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답변합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2차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3인 방통위법 개정안, 이 9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곧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십 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일을 가지고,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한 걸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보낸 것은 명확하게 위헌이다 하고 파면 사유 중의 하나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의 권한대로 탄핵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와 국회에서의 권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또 정치적인 대화나 타협을 시도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유상범 위원** 지금 송석준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전혀 관계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이는 마치 권투경기에서 화난다고 글러브를 빼고 밖에 나가서 흥기를 들고 와서 권투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석준 위원** 질문 요지에만 답하세요, 질문 요지.

○**유상범 위원** 평소처럼 하세요. 질문 요지에만 답을 해요.

○**위원장 정청래** 또한 국회법에 보면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 3분의 2, 200명에 의해서 탄핵할 수 있고 국무위원은 과반수 의결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탄핵을 곧장 의결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로 탄핵 조사를 법사위에 회부하여 탄핵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탄핵을 의결한 경우는 탄핵이 되는 것이고, 소추안이 의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로 회부한 경우는 오늘처럼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국회법 131조를 읽어 드린 것처럼,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된다’ 이 조항에 따라서 한다고 제가 읽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모르면 위원장이 그 법을 안내할 때 제대로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위원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마지막……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몇 조 몇 항에 일문일답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사위원장?

○**위원장 정청래** 스스로 공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혼자 잘하는 척하지 마시고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유상범 위원** 대답을 회피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계속 방해할 시에는 145조 1항에 따라서 경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박범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번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된 국회 권한

내의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피청구인 측은 그 당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비를 걸어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을 돌이켜 볼 때 오늘 한 나라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자 그 이전에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오늘의 청문회는 자못 중요하고 헌법 내재적이고 헌법 친화적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라는 헌법 침해적인 그러한 행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인 절차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란에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입니다. ‘쪽지’라고 표현되는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에서 과연 그 내용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것의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절차가 있는지 그조차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것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위한 일종의 절차적 에둘림,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 자체가 곧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게 위원장님의 협명하신 진행, 지휘에 의해서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장기채의 국채 매입이 국민을 배신한 반역적인 행위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과 관련해서도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팔겠다고 약속해서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언제 매입했는지, 매입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명확하게 쟁점이 드러나고 진부가 가려지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들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한 결정문, 판결문 114쪽을 제가 세 번 정독해서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오늘 운영과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설령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탄핵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이미 감사원장 탄핵 심리를 하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한 행위조차 독립된 헌법기관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상목 증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현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현재재판관을 추후에 또 임명한 것이 헌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심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25건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7건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이 9건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지언정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위헌·위법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재의 판결 결정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국회법과 현재 판결의 취지를 모르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답변함으로써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도 신문 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은 대정부질문 참석으로 인해, 김선택·임지봉 교수님은 수업 일정으로 인해 오후 회의에는 이석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최상목 증인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굉장히 참 황당하고 잘 납득이 안 가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오늘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상목** 예.

○**송석준 위원** 이번에 탄핵소추가 되셨어요. 정말 얼마나 그동안에 대행에 대행을 하시면서, 1인 3역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고생하셨다라고 위로는 못 해 드릴망정 무슨 파면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국회가 또 바쁘신 분,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일정 바쁘시지요? 최근에 현안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국내외 현안이? 이렇게 바쁘신 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또 청문회까지 하겠대요. 종전에는 그냥 바로 탄핵, 본회의 의결해서 처리하더니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또 청문회까지 하는 이 자리에서 뼅게 된 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면 제가 또 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소추자의 12·3 내란 관련 행위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에는 분명히 반대하시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또 이것은 내란이라고 확정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란 관련 행위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최상목** 그 당시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고요. 말씀 주신 그 문건과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 제가 그 자리에서 내용 확인을 당연히 못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한 직원은 담당 직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저희가 회의가 다 끝난 후에 내용을 약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하지 않고 반대한 계엄이고 제가 사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시하기로 했던 그런 사항은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F4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F4회의는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그때 열려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고 만약에 북이 도발했을 때도 저희는 F4회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북의 도발을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또 기타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했다, 마용주 대법관후보자 임명 안 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불이행했다 뭐 이런 사유를 대고 있는데 그것은 인사권자로서 충분히 재량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고민 사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요?

○**증인 최상목**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대행이 되는 순간 내부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가 모두 직무정지 중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의 관행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전임 대행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당시에 헌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여야 합의가 확인된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께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것에 강력히 반발을 하셨고 앞으로 협의를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협의를 안 하면 일부는 사의까지 표명한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 자체도 저는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은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재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헌법기관의 작동을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최상목 증인의 이런 답변도 있었지만 이번 우리 법사위, 대한민국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부를 훈들고 결국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파국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회의 비상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위 탄핵을 30번, 그 내용을 보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 줄줄이, 거기다가 또 이창수…… 검사 3인,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줄탄핵, 거기다가 심지어 모든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겠다고 해서 총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최상목 대행 탄핵을 보니까 이거야말로 스토킹탄핵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토킹탄핵.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끝났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 국회에서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증인, 오늘.....

○송석준 위원 스토킹탄핵은 범죄의.....

○위원장 정청래 멈춰 주세요. 시간 끝났어요.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중에 양해도 없이 이렇게 자르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5분 지났어요.

○송석준 위원 간사님, 이런 의사진행 해도 됩니까?

○박범계 위원 시간 끝났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증인, 오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미리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 예의를 좀 지키세요.

○위원장 정청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계엄 문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송석준 위원 아니, 질의 중에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계엄 문건에 보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정청래 위원장님, 본인의 질의가 안 끝났고 질의를 중간에 잘랐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본인이 다 할 거예요?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증인, ‘보고할 것’ 그러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고한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뜻이겠지요?

○유상범 위원 정청래 위원장 질의시간이 아니잖아요.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 저한테 양해도 안 받고 질의하는데 껴들고..... 그렇게 무질서한 행위, 즉각 중단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송석준 위원 질서 문란행위 즉각 중단하세요!

박범계 간사님, 주의 좀 주세요.

○박범계 위원 시간 끝난 뒤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라고 지금.....

○유상범 위원 아니, 질문을 잘랐으면 다른 사람에 넘겨야지 본인이 질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증인, 이 계엄 문건에 보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는 대통령한테 하는 거지요?

○증인 최상목 제가 그 부분은 참고 자료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거고 그다음에 실무자를 통해서 참고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이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증인 최상목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발언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장 정청래** ‘약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게 아니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을 본인이 질의하고, 그걸 가지고 왜 이러냐고.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 왜 이런 무질서한 행위를 주도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증인 최상목**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본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봤으면 봤고 안 봤으면 안 본 거지 약간 봤다는 게 어디 있어요?

○**증인 최상목** 아니요, 그 자리에서 본 게 아니고 1시 50분경에 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정청래 위원장, 위원 질의를 잘랐으면 그다음에 다른 위원한테 넘기든지 해야지 거기를 위원장이 들어와서 위원장 마음대로 질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송석준 위원**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질의 중에 끼어들어서…… 국민들께서 보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은 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위원장이 판단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가 수행되지 않을 시에는 2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본인부터 질서 유지 좀 하세요, 본인부터.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정지 및 퇴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본인의 역할 제대로 하시고……

○**위원장 정청래** 앉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 탄핵병 있는데 또 경고병까지 걸렸어요.

○**위원장 정청래** 앉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 경고면 경고 남발!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계속 서 있어요, 앉지 말고!

○**송석준 위원** 2차 경고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정청래** 김영환 위원 그냥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탄핵병에 걸리더니 또 경고병에 걸렸나 봐요.

○**위원장 정청래** 1차 경고 먹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김영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자중하시고요.

기획재정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된 김영환입니다.

먼저 최상목 증인, 제가 좀 짚어 드릴게요. 이제까지 대정부질문 때 있었던 최상목 증인의 발언들입니다.

고민정 의원 ‘쪽지’ 관련된 질의에서 열어 보지도 않고 직원한테 넘겼다고 하셨어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 질의에도 보지도 않고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김병주 의원 질의에도 보지도 않고 넘겼다고 그랬어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동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예비비 보셨다고 그랬어요.

○증인 최상목 그것은 그 자리에서 본 게 아닙니다, 위원님.

○김영환 위원 첫 줄의 예비비를 보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증인 최상목 그 자리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쪽지 상태에서 받았고요.

○김영환 위원 예비비를 보셨어요.

○증인 최상목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첫 줄의 예비비라는 단어를 보셨다고 직접 말하셨잖아요.

○증인 최상목 그것은 1시 50분쯤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김영환 위원 윤인대 차관보.

○증인 윤인대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증인선서 하셨지요?

○증인 윤인대 예,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재위에서 윤인대 차관보가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최상목 증인은 첫 줄의 예비비는 봤다고, 시간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인대 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쪽지를 받았어요?

○증인 윤인대 예.

○김영환 위원 접은 상태에서 받으셨어요?

○증인 윤인대 예,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기재위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아셨어요?

○증인 윤인대 그거 저는 봤습니다.

○김영환 위원 본인이 보셨어요?

○증인 윤인대 예, 저는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식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김영환 위원 그러면 본인만 보시고 끝났어요?

○증인 윤인대 저는 쪽지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한은 총재가 들어오셔 가지고 부총리께서 한은 총재와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회의 준비 때문에 밖에 나왔다가 잠깐 열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확인했고, 그러면 차관보 알았고 최상목 증인도 알았어요.

○증인 윤인대 그래서 그것은 아까 1시 50분경 저희가 1급 회의 돌아갔을 때……

○김영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비상계엄 군이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다 TV로 보셨지요?

○증인 윤인대 예, 봤습니다.

○김영환 위원 차관보,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 최상목 저한테 말씀……

○김영환 위원 침탈한 걸 봤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증인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다 보셨어요. 시민들이 저항하는 것을 보셨고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걸 보셨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봤습니다.

○김영환 위원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어렵게 이루어진 거 보셨어요?

○증인 최상목 봤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어요. 윤인대 차관보는 바로 언급을 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유동성……

○증인 최상목 위원님,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요.

그 당시 상황은 저한테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를 했고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고요. 시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자료, 참고하라고 준 자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어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관보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이 12월 10일 날, 그날이 예산안 뒤로 미룬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회의 의결……

○증인 최상목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12월 3일 원래 의결하기로 했는데 그날 의장께서 12월 10일 날로 옮기셨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중액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2차관이 뭐라고 예결위 간사한테 가져온 줄 아세요?

검찰 특활비 깎였었지요? 이거 언급도 안 했습니다. 언급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 들고 온 게 뭐냐? 예비비를 복원시켜 달라. 그러면 비상계엄 했고 예비비를 보셨고 차관보는 이게 비상계엄 자금인 것을 인지를 했고. 2차관은 왜 예비비를 가져왔을까요? 왜 혼자 결정을 했어요, 2차관이?

○증인 최상목 그거는 3일 계엄 전 아닌가요, 말씀 주신 것은?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12월 2·3일.

○증인 최상목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그러니까 무슨 인과관계로 물어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그 비상계엄 쪽지 문건은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달되기 전에.

○증인 최상목 위원님, 그렇게 추정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정청래 마쳐 주세요.

○김영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 김석우 증인에게 일단 여쭙겠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묵인이나 방조나 어떤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그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어떤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돋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묵인이나 방조가 되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분이?

○증인 김석우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쪽지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 혹은 다른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최상목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쪽지 관련해서 저는 봤냐 안 봤냐, 인지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요 이 쪽지를 보고 이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전혀 없습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돋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해서 현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미 다 판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래서 헌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다음에 특별검사를 추천·의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도 똑같은 탄핵 사유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지체 없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권한쟁의심판도 제기되어 있고 이런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어떤 헌법 위반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현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증인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과연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부분도 탄핵 사

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재판관 1명은 ‘어떠한 위법도 아예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증인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모든 탄핵소추 사유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지금 쪽지 하나 받은 걸 가지고 봤냐 안 봤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어떤 업무로 가시지요?

○증인 최상목 다음 주에 미국에 IMF 출장을 갑니다만, G20하고요. 그런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통상 현안 관련돼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이 왔고 지금 현재 일정하고 참석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하면서 이미 판단이 다 이루어졌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상목 증인을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회담을 해야 되는 당사국 당사자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게 원활한 회의와 회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탄핵청문회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회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상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이석을 해야 됩니다, 임지봉 교수, 김선택 교수, 이주호 장관. 그래서 혹시 그것을 염두에 안 두셨으면 오전에 이분들에게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이석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최상목 증인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방임·회피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협법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행위로 인해서 국가 혼란을 야기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음에도 아직까지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저는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파면 이후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저는 파면 이전, 이후와 관계없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박희승 위원**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이후 일련의 행태를 짚어 보겠습니다.

국회는 12월 26일 국회 봉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뒤 4월 8일에야 임명이 됐는데 103일이 걸렸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재판관 1인의 공백은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현재 평의가 늦어진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현재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맞지요?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기화에 차관도 동조한 책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건의했습니까?

○**증인 김석우** 당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간담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 추천 3명에 대한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 권한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야 합의라는 관행도 확립된 관행은 아니다……

○**박희승 위원** 그것은 그만하시지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증인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2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증인의 부작위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현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을 혼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총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최상목……

○**증인 최상목** 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은 임명을 해서 헌법 절차는 진행을 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현재 결정이 난 다음에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그렇지만 국무회의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가 작동이 되려면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작동할 의무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박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거부권은 이렇게 쉽게 행사하면서 어떻게, 더구나 국회에서 추천한 봉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임지봉 교수님, 잠깐 좀 물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67조 1항은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위헌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자체 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만약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협의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하셨는데요. 왜 위법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임지봉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서, 최상목 부총리께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현재가 인용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그 경우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인용결정이 났으니까 임명장을 교부 안 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청구인인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그 위헌 상태를 자체 없이 해소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 없이’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것인데 자체 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고 계셨던 것은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증인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결정하면서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증인 김석우 내란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배숙 위원 없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형사재판 중이지요?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형사재판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미 국회의 소추인단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어요. 그 배경을 보면 왜냐,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또 따로 지금 법원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결론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뺏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소된 것만으로 무슨 내란, 내란 하는데 이것 내란 몰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과거 전두환 내란 사건 판례에서 계엄이 해제되면 내란이 종식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이미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내란이냐 여부의 그 논의는 그때 딱 종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례가 있는데도 계속 내란이다, 내란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요.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계엄 선포하는데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같은 논리라면, 지금 이재명 피고인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피고인 억울하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피고인의 죄명인 위증교사, 허위

사실공표, 대북송금 공범들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이것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증인 최상목 예.

○조배숙 위원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관세 전쟁입니다. 아주 국가적 위기 상태예요. 그렇지요?

○증인 최상목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독일은 지금 이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해서 좌우 대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지율이 낮아 가지고 야당으로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정쟁 중단을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피해가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는데 그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다 불러다 놓고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과거 일 때문에, 탄핵하고…… 정쟁만 일삼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일주일 후에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면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부총리가 지금 탄핵소추돼 가지고 청문회 나왔고 이것 다 알 것 아닙니까? 협상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그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급급한 정당이 아닌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탄핵은 지금 대장동, 민주당 돈봉투 수사 등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제외하고서는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대개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원칙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부총리 지금 바로 탄핵하면 역풍이 부니까 그것 좀 겁내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좀 올려 주십시오.

보세요. 탄핵 사유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서 대개 해답이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1번 항을 보면 아까 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은 문건을 하급자한테 전달을 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금 관세 전쟁 말씀하시는 데 관세 전쟁보다 현정 질서 파괴 전쟁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증인 최상목 예.

○김용민 위원 퍼스널 컬러 뛵니까? 퍼스널 컬러 검사했잖아요. 뭐예요?

○증인 최상목 그건 제가 검사한 게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뭐 나왔어요?

○증인 최상목 그날은……

○김용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 최상목 취업박람회에서, 취업박람회에……

○김용민 위원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증인 최상목 거기 취업하는 젊은이들 행사를 참석한 겁니다.

○김용민 위원 궁금하지 않으니까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진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교체했네요. 대부분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면 정부 인사들, 박성재 법무부장관 두 번, 김용현 세 번, 조지호 청장 두 번, 이완규 법제처장—저 앞에 있는 사람—한 번, 왜 이렇게 교체합니까? 이것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최상목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증인 최상목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좋아요.

그리고 김선택 교수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일단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부터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당시 11월 26일 날 제청을 했고 국회에서 12월 27일 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선택 당연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 이런 얘기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참고인 김선택 예, 위헌입니다.

○김용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4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가결시켰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인정되기까지 63일 정도 걸렸는데 이때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탄핵 사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을 그만뒀던 3월 24일까지 25일 동안, 다시 말해서 현재 결정이 있는 이후부터 25일 동안 또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 다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고인 김선택 특히 중요한 부분이 2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미임명일 뿐만 아니라 선별 임명, 선별 미임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임명보다 선별 미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심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월 27일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별적 미임명 행위가 구체적인 헌법상의 작위의무 위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25~26일간 계속해서 그런 위헌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현재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공직자로서 탄핵을 시켜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선택 탄핵 사유가, 그런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위헌·위법한 행위만 있으면 탄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참고인 김선택 현재가 중대성 요건을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김선택 중대한지 여부의 판단이 이제 문제 되는데 이 케이스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말했던 국민의 신임 배반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한 것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2월 27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서 위헌 행위를 결정한 것 이후에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의 관점이 아니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인용이 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려 볼게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현재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뭇 2명을 지명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김선택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때의 권한대행하고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이후 궐위 상태의 권한대행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직무정지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대통령의 종래 인사나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현상 유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돼서 궐위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 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원래 한시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이 정부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참고인 김선택 케어테이커 거버먼트(caretaker government)입니다. 케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장관!

○증인 최상목 예.

○위원장 정청래 방금 김용민 위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장경태 의원실에서 휴대폰 기기변경 내역 제출하라 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조규홍, 오영주, 이주호, 심우정, 윤인대, 박종준, 최상목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을 자료로 받았나 봐요, SK텔레콤으로부터. 제가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주호 증인, 뒷번호가 6031이고 2022년 8월 16일 날 갤럭시 와이드4에서 갤럭시 S22로 바꿨지요?

○증인 이주호 예.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그런데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핸드폰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이게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 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SK텔레콤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바꿨다,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증인 최상목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셔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김용민 위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요?

○증인 최상목 분명한 것은 핸드폰 기기를 과거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바꿨네.

○김용민 위원 아니, 바꿨는지를 물어봤지. 왜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 바꿨구먼요, 바꿨구먼.

○증인 최상목 아니, 고장이 나 가지고 새로……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증인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바꾼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증인, 잠깐만요.

○김용민 위원 위증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서영교 위원 웬일이야.

○위원장 정청래 (영상자료를 보면)

김용민 위원의 질의 ‘핸드폰을 교체한 적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지요?

○증인 최상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제가 그게 이상해서, 이 자료에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6로 바꿨다고, 장경태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증이에요.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지적을 받고 ‘맞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위증죄를 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받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그런 조항 내용을 왜곡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조문 그대로.

○서영교 위원 위증이지, 위증.

○증인 최상목 정확히 말씀, 왜냐하면……

○유상범 위원 중간에 사실관계 정정을 하면 위증이 아니라고 되어 있지 이게 어떻게 사하고 말고예요?

○주진우 위원 조문 자체를 그렇게 해석해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증인 최상목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꿨느냐, 저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그런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게 바꾼 거지 뭐니까.

○증인 최상목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청래 둘 다 갖고 있다고……

○증인 최상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꾼 게 중요한 거지.

○서영교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주진우 위원 의도적인 교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주진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핸드폰을 갖고 있다니까, 갖고 있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김용민 위원 질의는 핸드폰 사용하는 기종을 바꿨느냐 교체했느냐고 물어봤지 바꾼 기종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교체했느냐?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은 위증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상목 증인을 생각해서 국회법에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정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안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법 조항을 적용을 받아서 ‘아까 김용민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위증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위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 증인 협박하지 마시고 제 질의시간 주세요. 본인 그거 할 때 하시고.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협박은 말지요.

○위원장 정청래 안내하는 겁니다.

○이성윤 위원 그게 뭐가 협박이에요, 지금 위증했는데. 명백한 위증이에요, 명백한 위증.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 뭐가 협박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박균택 위원 자백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백할 기회를.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설명했잖아.

○주진우 위원 그게 무슨 자백입니까?

○박균택 위원 자백할 기회를 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진우 위원 아니, 이번 기회 중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김용민 위원 왜 위증을, 처벌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위증으로 고발하든가.

○유상범 위원 뭔 고발을 해.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회의 일정 내에서 다 정리가 됐잖아.

○김용민 위원 위증인데, 명백한 위증인데.

○주진우 위원 그게 무슨 위증이 돼요?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국민의힘·민주당 위원님들 다 조용히 하세요.

○서영교 위원 저게 위증이 아니면 뭐가 위증이에요?

○주진우 위원 저거 위증 안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최상목 증인의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증인 최상목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했습니다만 핸드폰 기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장이 난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새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위증한 거 사과하세요.

○김용민 위원 고발하지요, 고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박은정 위원 고발하세요.

○주진우 위원 그 취지가, 그게 어떻게 위증입니까?

○**박균택 위원**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김용민 위원**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박균택 위원** 기재부장관 특성이 절대,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이 위증에 관한 조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이 정확하게 읽어 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1·2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이 탄핵조사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제가 권면을 드린 거고 안내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최상목** 저는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만,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를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사과도 해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수정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김용민 위원**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저한테 사과 안 해도 되니까.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이건……

○**증인 최상목** 오해를 불러일으켜 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제가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하세요.

○**주진우 위원** 왜 이렇게 사과 못 받아서 난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하면요 휴대전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뭔가 증거인멸용으로 없앤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고장 나서 바꾼 것이고 바꾼 휴대폰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증거인멸 의도로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다 이런 게 발언 취지 아닙니까?

○**증인 최상목** 예,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게 지금 와서 바로잡아서 팩트가 나왔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판례상으로도 기억에 반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또 같은 기일 내에서 자기 발언을 바로잡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매번 이렇게 증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임지봉 교수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임지봉 교수님께 저도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예전에 임지봉 교수님이 발언하신 공개 내용을 보니까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조항인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넓게 확대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자로서 법률적 견해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참고인 임지봉 아니, 그런데 그 건하고 지금 최상목 부총리하고 무슨 관계지요?

○주진우 위원 헌법 84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아까 법률적 견해의 일관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참고인 임지봉 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 청문회에 관한 내용만 답변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인이나 증인은 기본적으로 그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법률적 견해를 밝히거나 학자로서 견해를 밝힐 때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견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임 교수께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발언하고 그 공개된 발언이 언론 보도에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학자로서의 견해는 존중하지만 이게 지금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시각을 가지고 증언해서는 객관적인 증언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임지봉 답변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드린 겁니다. 본 사안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유상범 위원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누구 마음대로 나와서 얘기해요.

○서영교 위원 답변 당연히 해야지요.

○유상범 위원 묻는 것도 아닌데 뭔 답변을 해요.

○주진우 위원 아니, 아까 그 답변을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그렇게 물었구먼.

○위원장 정청래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주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주진우 위원 법무부차관님!

○증인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지금 저는 이 탄핵 남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에서 탄핵소추가 남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현재가 다루는 것 자체가 현정사에 되게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가 남용

으로까지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을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 불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방통위원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장관 탄핵 사유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로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탄핵 비용도 문제예요. 지금 탄핵소추됐던 국무위원들이 일을 못 한 상태에서 국민 혈세로 월급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벌써 4억 6000만 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이름만 올리면 지금 청년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을 수임하지도 못하는 판국인데 여기는 이름만 올리면 10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증인 김석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고 의원내각제 요소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 있는 내각불신임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는 소추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각 불신임 제도가 없다고 하는 우리 헌법상 정신을 고려해서 탄핵소추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주진우 위원님, 제가 잠깐 못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탄핵소추 변론 비용 국회 예산 얘기하신 겁니까?

○**주진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은 17명으로 했고요. 이 기준은 박근혜 탄핵 때 1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변호사들을 추천하라고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소추 단도 구성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진우 위원** 저는 다른 탄핵까지 다 합친 내용입니다, 다른 탄핵 비용까지.

○**위원장 정청래**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추천했고, 그래서 17명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규칙에 따라서 변호사비를 책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규칙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인으로 하면 1100만 원인데 로펌으로 하면 4명이 1100만 원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추위원으로서 오히려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지금 이삼백만 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소추 사건 같은 경우는 여야가 동시에 1명씩 동수로 변호사를 추천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만 일방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썼다 이런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사도 같은 수로 지금까지 탄핵 법률대리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김선택 교수님, 임지봉 교수님, 두 분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말 현재가 상당한 기간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에 두 분께서 바른 말씀, 방향 또 잘 제시해 주셔서 옳은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지난 정권이 되겠지요, 윤 정권에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저는 몇 명 못 봤는데 그래도 이복현 원장께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님!

○**증인 최상목** 예.

○**박균택 위원** 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나라 경제가 망가진 부분이든 내란 이후에 취했던 행동들이든 수많은 문제가 제기돼도 항상 변명이 길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누가 한 말인지 압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한 말입니다.

○**박균택 위원**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본인은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저는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노력한 결과가 그겁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계엄 반대했다고 그러셨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옆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옆에 계셨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최상목** 옆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국무회의에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최상목** 예, 국무회의인지 모르고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박균택 위원** 그때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본인이 말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직을 걸고 팔다리를 붙잡고 막는 행동 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것은 기재위나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직을 걸고 막았어야지.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증인 최상목**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설득해도 안 됐으니까 가서 발표하시오, 내란범죄 저지르시오라고 방관하는 게 그게 장관의 태도입니까? 뭘 그렇게 잘난 게 많아요?

○**증인 최상목** 제가 잘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박균택 위원** 부끄러움을 아세요. 항상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계속 거부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것 몰랐습니까?

○**증인 최상목**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임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84일간, 84일간 안 했는데 노력했어요?

○**증인 최상목** 제가 두 사람을 임명을 해 가지고 일단 헌법재판소는, 헌법 절차는 돌아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박균택 위원** 마은혁 재판관을 묻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후에도 28일간 그걸 결정을 뭉갰어요.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증인 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박균택 위원** 그걸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진다고 얘기를 해요.

○**증인 최상목** 그다음에 그때는 또 권한대행, 그러니까 총리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국민들은, 상식인들은 그런 경우를 두고 개진다고 얘기하지 노력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명령을 하고 본인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 해 놓고 노력했다, 무슨 궤변이에요?

그리고 경호처 영장집행 거부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때는 무력 충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썼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경호처한테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무력 충돌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방치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측에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정말 부끄러움을 아세요. 그거 직무유기 범죄로 고발되어 있는 것 알지요?

그리고 경제장관으로서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었는지 자체가 저는 의문스러워요.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정, 혼돈 상황 아닙니까?

○**증인 최상목** 그래서 현재재판관 2명 임명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왜 정국을 혼란시키는 이런 상태를 더 방치하고 그걸 물러날 때 까지 계속 방관을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기를 바래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민간인 때부터 오래 가지고 있던 외화 예금을 외화 국채로 전환한 것뿐입니다.

○**박균택 위원**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본인이 경제비서관 하면서 재벌들한테 486억 뇌물 수금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것도 안 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 당시는 제가 정상회담에 문화재단이 참여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했고요.

○**박균택 위원** 돈 뜯는 역할을 했잖아요, 분배하고. 돈 안 내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고 압박까지 했던 것이 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증인 최상목**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균택 위원** 이것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까지 반드시 기소가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구치소로 가게 만들 겁니다.

○**증인 최상목**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증인 최상목**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범죄들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균택 위원** 나는 판결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유죄 난 것 모릅니까? 그 뇌물의 뻥을 뜯은 사람이 최 장관입니다.

○**증인 최상목** 그게 아니고 제가 미르재단 부분에 대해서 뇌물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무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은 정부청사가 아니고 서울구치소여야 한다는 사실 곧 보여 줄 겁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의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도리라는 점 분명히 명심하세요.

○**유상범 위원** 안 그러면 분이 왜 갑자기 그래요?

○**곽규택 위원** 뭘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박균택 위원** 저 공직자를 보면 용납이 안 돼요!

○**곽규택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뭘 이렇게 흥분해?

○**박균택 위원** 공직자 자격이 없어요.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 정도 하고요.

○**김영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구 관련된 건데요.

○**위원장대리 박범계** 김영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최상목 증인, 간단한 건데요. 미국채 매입 관련된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당시 미국채 매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매도 시점과 이후에 또 추가 미국채 매입 시점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 질의 전까지.

그다음에 혹시 기재부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GDP 하락부터 시작해서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비용추계를 한번 기재부에서 해 본 적 있어요? 저희가 해서 알려 드린 적은 있지만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서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 GDP 피해, 그다음에 수입 물가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증시자금 이탈부터 시작해서 혹시 기재부 자체에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채 관련된 자료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아니,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할 수 있잖아요?

○ 증인 최상목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정확하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 증인 최상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공직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가 인사청문회 끝나 가지고 곧바로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있던 그해 연말에는 그게……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면 그 시점은 2023년, 아니면 2024년 1월입니까?

○ 증인 최상목 아닙니다. 12월 31일 자니까요.

○ 위원장대리 박범계 12월 31일……

○ 증인 최상목 23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가 12월에 있었으니까……

○ 위원장대리 박범계 12월 말에 있었어요, 말에.

○ 증인 최상목 12월 중에 팔았습니다. 팔아 가지고 12월 삼십……

○ 위원장대리 박범계 12월 말에 팔았습니까?

○ 증인 최상목 예, 그래서 12월 31일 자 제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다.

○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게 궁금했고요.

○ 증인 최상목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좋아요. 아무튼 그것은……

○ 증인 최상목 그런데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인사청문회나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니까…… 제가 외화 예금을 갖다가 2018년도, 민간인 신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화 예금을 외화 국채로 바꾸는 것을 저한테 소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대로 산 건데요, 그것을 제가 꼼꼼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니까 언제 샀다는 얘기입니까?

○ 증인 최상목 그게 24년 중반 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중반이 언제예요? 7월이에요, 8월이에요?

○ 증인 최상목 8월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8월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고 있던 달러를 국채 매입으로 전환했다.

○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전환했다는 게 매입한 거지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달러를……

○ 증인 최상목 예, 그렇지만 결국은 그 얘기는 환율 변동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것은 질의 내용에……

그래서 오늘 분명해진 겁니다. 23년 12월 말 인사청문회 직후에 갖고 있던 미국채를 매도했고—그때는 매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이행이었고—그리고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미국 달러를 2024년 8월에……

○증인 최상목 예, 8월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국채를 매입했다.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됐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위원장대리 박범계 김영환 위원님, 이것에 기초해서 잘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택 위원님까지 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오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인데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재의 탄핵 기각 이후에 다 복귀를 하신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라고 나오는 것들도 이미 국회에서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현안질의 다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 또 하고 또 하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특위 열어서까지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유들을 다 확인한 건데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이렇게 재탕, 삼탕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지 무슨 위법을 추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는 못 할 사안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하니까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임이 선포된 그날 ‘기획재정부장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쪽지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쪽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못 하고 그냥 바지 주머니에 구긴 상태로 넣고 있다가 그다음에 실무자로 옆에 있던 윤인대 차관보한테 전달했지만 윤인대 차관보는 이 내용하고 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받은 사람도 그것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증인 최상목 예, 정확한 건 제가 접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증인 최상목 예.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F4 회의에 참여하신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 F4 회의를 할 때, 세 분 같이 말씀해 보세요, 이 쪽지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부총리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세 분 다 이야기해 보시지요.

○증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금감원장님은요?

○증인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당시에는 재정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고 금융시장 안정 얘기만 주로 논의됐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이 쪽지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께서도 전혀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날 경황이 없이 F4 회의를 진행하셨던 것 아닙니까?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곽규택 위원 시간 잠시 멈춰 봐 주시지요.

윤인대 차관보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봐 주시지요.

이게 그날 받았다고, F4 회의 전에 받은 쪽지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지 한번 재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증인 윤인대 재연한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정도로 접혀 있었고요, 이것을 주머니에서 주셔 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곽규택 위원 한번 넣어 보세요.

○증인 윤인대 이렇게 제가 주머니에 넣었던 것으로……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있었나요?

○증인 윤인대 받아 가지고 저는 밖에 나와서 내용을 얼핏 봤는데, 그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다시 복귀를 해 가지고 1급 간부회의 하면서 아무 말씀 안 주시길래 제가 말미에 ‘이것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부총리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박범계 위원 와서 마이크 있는 테다 해요.

○위원장 정청래 가만히 계세요.

○박범계 위원 중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곽규택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신 적이 하도 많아요.

윤인대 차관보님!

○증인 윤인대 예.

○곽규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하셨지요?

○증인 윤인대 예, 계속 동일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하셨지요?

○증인 윤인대 예, 참고인 진술 다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은 없는 거지요?

○**증인 윤인대** 예, 변동이 없고요. 혹시 그게 지시라고 제가 인지를 했으면…… 저는 사실 부총리님 처음 봤을 때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저것을 제가 지시로 느꼈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지시 이행 거부했을 겁니다.

○**곽규택 위원** 이 쪽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차관보의 담당 업무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증인 윤인대** 예, 저는 국내 경제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행한다고 그러면 예산 쪽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곽규택 위원** 본인 업무와는 상관도 없다?

○**증인 윤인대**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처럼 혹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위원장한테 미리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시간을 정지하고, 그리고 저기도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문건이지요? 이게 쪽지예요? 이런 쪽지 있어요?

○**증인 최상목** 받을 때는 쪽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이게 쪽지예요?

○**증인 최상목** 받았을 때는 쪽지로 받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접으면 쪽지가 돼요, 이게?

○**증인 최상목** 당시에는……

○**서영교 위원** 이런 게 쪽지예요? 이런 게 쪽지예요?

○**증인 최상목** 저는 받았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종이인지 몰랐습니다.

○**서영교 위원** 뭘 몰라요? 이 종이가, A4 용지를 뭐 한두 번 봐요? 이만한 내용을 쪽지라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이유는 뭔가 캉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증인 최상목** 그런 게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이것 내란이잖아요. 그리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내란이에요, 내란. 그러면 내란이라고 고발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란이라고 바로 고발하고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쪽지라고 얘기해요?

윤인대 차관, 이게 쪽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4 용지 이런 것 놓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김영환 위원** 지시 문건입니다, 지시 문건.

○**서영교 위원** 지시 문건이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나눠 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봐야지요. 그리고 ‘이 것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이것 고발해야지요. 그러고서는 나와서 ‘저는 반대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돼요?

두 번째, 지금 막 속보가 떴어요.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싹 다 압수수색이에요. 아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지금 관저 전부 다 압수수색이에요. 그런데 안가만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청에서 반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란을 계속 동조해도 되겠어요? 세상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세상 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 알고 예비비 준비하려고 했던 최상목 관련해서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을 남발한다고요? 징계를 때리고 그 검사, 잘못된 사람들을 잘랐어야지 자르지 않으니까 탄핵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니까 끝내 누가 탄핵된 겁니까?

기재부장관, 윤석열 탄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인 최상목** 탄핵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 파면됐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거기의 경제수석이 누구였어요, 대통령 시절에?

○**증인 최상목** 제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최상목이에요.

그리고 파면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누구예요?

○**증인 최상목** 저입니다.

○**서영교 위원** 최상목이에요.

윤석열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해서 파면됐어요. 그러면 거기의 기재부장관, 경제수석 했던 사람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증인 최상목** 저는 곧 사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곧이 아니라 파면되고 나니까 이제 사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사퇴했어야지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정부 21년, 22년—코로나 때예요—그때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21년 61조, 22년 52조예요. 그런데 23년, 24년, 윤석열 그리고 경제수석인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인 최상목 시절에 56조, 30조 세수 부족이에요. 이러고도 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가 차고 넘치는데 이 경제 다 망가뜨린 걸로 탄핵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증인 최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은 자산시장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 그 뒤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어려운 코로나에서……

○증인 최상목 복합위기 직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경제 수장으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 책임 안 하고.

○증인 최상목 떠넘기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했지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한다고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자영업자들이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판매 등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자영업자에 대못 박을 거면 경제 수장은 왜 합니까?

○증인 최상목 그게 아니고 자영업자한테 돈을 나눠 주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보세요. 세금은 누구 돈이에요? 세금이 기획재정부장관 돈이에요, 자영업자나 사람들에서 나온 돈이에요?

○증인 최상목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 경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저러니까 탄핵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금은 국민이 낸 돈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어려울 때 세금으로 돌려줘서 마중물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증인 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서영교 위원 마지막, 핸드폰을 바꿔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핸드폰을 12월 7일 날 바꿨어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12월 7일 날 바꿔 놓고 안 바꿨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저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지 오늘 국민이 만천하에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상목 장관이나 이주호 장관이나 부총리들이십니다. 아까 최상목 장관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찬성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런 내란 사태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자리라도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열 번, 백 번,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분들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피해자들이 하는 거고요, 사과는 가해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같은 태도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고위 관료들이라면 그러한 자세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최상목 장관이나, 이주호 장관은 발언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서영교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어쨌든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쨌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옳지 않겠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최상목 장관님!

○**증인 최상목** 예.

○**박은정 위원** 권한대행을 얼마나 수행하셨습니까?

○**증인 최상목** 한 88일 정도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당일 날 윤석열 당시의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을 불러서 밑에 사람 시켜 가지고 계엄 문건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증인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부르시고 손짓을 하니까 옆에 있는 실무자가 저한테 하여튼 쪽지 형태로 접혀 있는 걸 줬습니다.

○**박은정 위원** 쪽지 아니고 문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이 전달된 건 맞습니까?

○**증인 최상목** 저는 당시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받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어쨌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이 최상목 장관께 전달된 것은 맞습니까? 불렀으니까요.

○**증인 최상목**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그 문건을 안 보셨다는 거지요?

○**증인 최상목** 예, 접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어쨌든 거기서 나가서도 안 보셨다는 거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 당시에 나와서 저는 사퇴할 생각이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나 봅니다. 대통령이 장관한테 문건을 줬는데 그 문건을 안 봤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장관한테 뭘 지시를 했는데도 장관이 대통령의 그 지시를 무시한 거네요. 그리고 본인은 국채도 사시고요.

그리고 권한대행의 문제가 지금 탄핵소추가 돼서, 네 가지 사유로 소추가 됐는데 모두가 다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상목 장관님, 한번 보세요.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났거든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지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승리 상황이 우려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고 해요.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불출마 기사를 보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 단독 보도는 아마 사실이니까 보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선거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대행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 저 보도는 아마 사실이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 위원**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했으면 이 사람 선거관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해 가지고…… 대통령도 아니면서 저기 앉아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본인이 지명해 놓고 오늘도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지명이 아니랍니다, 발표만 했지. 이완규 법제처장 인사검증 자료 내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 드립니다. 지명 아니라고 합니다. 잘 아세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선거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서 발언한 것 가지고 탄핵소추가 됐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탄핵소추 사유 하나씩 쌓아 가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최상목** 제가 대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본인도 출마 의사 있으세요?

**○증인 최상목** 저는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김선택 교수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권한대행은 과연이 된 이후에 궐위된 이후에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선거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특정 대통령후보의 출마를 막는 것이 자기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선거관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선택**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의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내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권한을 선취해서 잠탈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승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선거를 해야 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라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최상목 대행도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탄핵소추된 것입니다.

교수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 탄핵소추 말고도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찰청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경찰청 차장한테 전화합니까? 전화해서 경찰이 경호처를 왜 막고 있느냐 이렇게 전화하신 것 맞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증인 최상목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질의가 와서 확인차 전화했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게 윤석열 편들어서 체포영장 저지에 본인이 도와주신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 신승남 검찰총장은 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사에게 내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전화한 것만으로……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직권남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본인의 탄핵소추 사유는 이 네 가지 말고도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한 그 부분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시간 적용 좀 정확하게 하세요. 편파적이잖아요. 경고 줘요, 경고.

○위원장 정청래 방금 곽규택 위원이 귀엽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님 신문하세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님!

○증인 최상목 예.

○김기표 위원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서 권한대행이 됐지요?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전날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선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전날이에요.

○증인 최상목 예, 세 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 후에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서 대행 기간이 날수로 따지면 한 88일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돼서 권한대행 그만둘 때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건 사실이지요?

○증인 최상목 두 분은 임명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묻고 있습니다. 임명하지 않았지요?

○증인 최상목 임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왜 임명을 안 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 당시에 제가 밝힌 것처럼 제 전임자가 일단 당시에 대행이 임명할 권리가 제약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현정사의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미 대행은……

○증인 최상목 그래서 그걸 제가 따르기 위해서, 따르려면 여야 합의가 돼 확인된 두 분은 하고요.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증인 최상목 나머지 한 분은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표 위원 최상목 당시 장관이 권한대행이지 지금 탄핵소추돼서 직무정지된 사람이 권한대행입니까? 전임자가 어떻든 간에 권한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판단해야지요.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증인 최상목 그렇지만 제 전임자…… 제가 그분의 대행 그러니까 제가 그 후임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자기 자신이 대행이면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전임자가 100% 맞게 판단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임자가 어땠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기속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증인 최상목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임명을 한 겁니다.

○김기표 위원 두 사람은 왜 임명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래야 헌법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마은혁도 임명해야지요.

○증인 최상목 그렇지만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안 할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진짜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란했을 텐데 그리고 갔으면 내란 했을 거예요?

○증인 최상목 그것은 비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비유가 되지요. 왜냐하면 전임자의 판단이 말이 안 되면 본인이 바꿔서 자신의 권한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전임자가 그러면 어떤 판단 하든 다 기속됩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돌아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임명했다면 마은혁도 임명해야지요. 왜 그걸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요.

○증인 최상목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요.

○김기표 위원 예? 뭐라고요?

○증인 최상목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 말 하던가요? 누가 그런 조언 하던가요?

○증인 최상목 제 전임자가, 한덕수 총리께서 그러셨습니다.

○김기표 위원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전임자가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증인 최상목 헌정사의 관행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김기표 위원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한 것이 넘어오면 이 법안이든 뭐든 국회에서 몇 표가 찬성이고 몇 표가 반대했다 이것 따져 가면서 일합니까, 국가가, 정부가? 국회에서 지금 여야 합의든 아니든 국회 그 기관이 결정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것을 여야 합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러면 권한쟁의 선고가 난 다음에도…… 지금 며칠입니까, 한 이십몇 일 안 했잖아요.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처음에 두 분을 임명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 작동하게 하는 게 또 저의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하고 국무회의 작동하는 건 무슨 관계예요?

○**증인 최상목** 현재는 그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기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 최상목** 국무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김기표 위원** 잠깐만요. 조용히 해 보세요.

○**증인 최상목** 논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것 봐요, 지금 딴 얘기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결정했어요. 그로부터 26일 동안 본인이 임명 안 했어요. 그걸 왜 안 했냐고 묻는데 왜 국무회의 얘기를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도 국무회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증인 최상목** 설득 중이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26일 동안 설득 중이었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김기표 위원** 그래서 설득이 안 되면 100일이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안 할 생각이었어요?

○**증인 최상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언제 할 생각이었어요? 언제 하려고 그랬나고.

○**증인 최상목**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다시 가정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증인 최상목**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하면 국무회의에 부칠 필요도 없이 그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증인 최상목** 위원님……

○**김기표 위원** 그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나요?

○**증인 최상목** 그 결정이 되고 나서 한 총리의 변론도 종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

○**김기표 위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누가 못 하게 하던가요?

○증인 최상목 그런 사람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없었다면서 왜 또 아까 국무……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김기표 위원 잠깐만 뭐 하나만 물어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면 안 따를 겁니까?

○증인 최상목 반대하면 안 따르는 게 아니고요. 국무위원들 설득을 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장관님!

○증인 최상목 예.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권한대행의 ‘대’ 자는 ‘대신할 대(代)’ 자지 ‘큰 대(大)’ 자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자를?

○증인 최상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여야 합의가 돼서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끝까지 그 입장을 취해야지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마은혁은 왜 또 임명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 어느 조항에도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뭐냐하면 법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반대로 헌법 37조 1항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저는 헌법의 여러 가지 조항이 다 마음에 들지만 이 조항도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없는 조항까지 들이대면서 그 논리를 들이대는데 그건 무논리고 비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비상식조차 일관성이 없잖아요. 가사여야 합의가 안 돼서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시든가. 정부가, 일반인 개인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국가를 책임진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이중잣대 하니까 더더욱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지만 이번에 현재재판관들도 8명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의 양심으로 기각 사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한 거지 않습니까? 법을 팬히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회에서 좀 합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법은 없지요. 그런데 국회가 추천하기로 했으면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의견을 맞춰 가지고 국회 몫을 추천하는 게 상식입니다. 2012년도에 국회에서 재판관 올린 추천사유서 한번 보십시오. 강일원 재판관 추천하면서요 ‘추천 교섭단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이렇게 사이좋게 이름 올려 있지 않습니까? 우측 거 보세요. 마은혁 재판관 하면서 ‘추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가 과거에 여야가 합의해 가면서 협치를 이뤘던 그런 사례들을, 좀 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길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국내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오늘은 한국 경제 책임지는 F4 모두 호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시도는요 한마디로 경제테러입니다. 경제위기 외면하고 경쟁으로 시선을 돌려 가지고 경제부총리를 지금 선거의 쟁점으로 삼겠다 이런 겁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이요 여야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발 관세정책,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경제안보 개념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공급과잉, 자원의 신무기화 등등 지금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달 초에, 작년 8월에 한 번 있었고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원·달러환율이 지금 1487.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신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막아 내고 악화되는 경기지표를 억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태세 갖춰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팀 이런 분들, 정부의 노력 그리고 또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들이 함께 합심해 가지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최상목 부총리 지금 탄핵하겠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금융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까요?

대외신인도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증인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병환 아무래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 대한 불안감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면 이것 또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병환 예.

○박준태 위원 자료 한번 올려 주세요.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상황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이런 말씀 하신 모양이에요.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금융이 지금 제 역할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증인 김병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혼들리면 시장 신뢰가 무너지는 데 그렇게 되면 금융권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관망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병환 아무래도 현재 당국의 어떤 확고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PPT 한번 다시 띄워 주시지요. 넘겨 봐 주세요.

지금 국무위원들 막 탄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국무위원들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3분의 1을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각기 다른 다양한 이유들을 대서요.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 다 감옥 갔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인식의 오류가 있을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그걸 바로잡고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야 합의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조항이 없이 무논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그 무논리라도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아서 임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마은혁은 왜 임명했냐,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방금 박준태 위원님이 '여야 합의한 경우가 있었다' 하는데 여야 합의라는 전제조건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그렇다면 그 논리라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은 현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도장까지 찍힌 여야 합의 사항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가사 인정하더라도 여야 합의는 있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도장이 찍힌 합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증인 이완규 임명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박지원 위원 아, 지명을 받은 거예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증인 이완규 지명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박은정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오늘 한덕수 측에서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인 이완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앞두고 이게 얼마나 혼돈스러운 얘기……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이게 도대체……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빨라 놓은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오늘 왜 나왔어요? 발표만 했습니까?

○증인 이완규 오늘 저는 최 부총리님 청문회……

○박지원 위원 됐어요.

경제부총리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곧 사퇴한다고 하셨지요?

○증인 최상목 임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남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핸드폰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진짜 천재스러워요. 그건 징구 발언이 아니잖아요. 사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사퇴할 거예요?

○증인 최상목 그건 제가 가정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증인 최상목 아까 위원님, 사퇴 부분은 이 정부가 두 달 남았기 때문에 두 달 뒤에는 제가 사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지원 위원 자, 좋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오시는데……

○증인 최상목 제가 갑니다.

○박지원 위원 만날 거 아니에요?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알래스카 LNG관을 하면 관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소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 최상목 알래스카 LNG를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질문은 그렇게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거기도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지원 위원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에너지 석유기업인 미국의 엑손이나 영국의 BP도 알래스카 LNG 유전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손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복로를 시키려고 하는 이 작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증인 최상목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 일 없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전화하면서 대통령 나오냐 얘기한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역시 트럼프다운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한덕수 대행을 끼워 놓고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것을 잡으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최상목** 글쎄, 그건 제가…… 왜냐하면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어렵고요. 다만 양 정상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그걸 하면 안 돼요. 사실 말이지요, 보세요. 한덕수 대행은 국회에서 합법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추천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가지고 탄핵당했지요?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랬지요? 최상목 대행은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은혁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은 임명 안 했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인용됐는데도 임명 안 했지요?

○**증인 최상목** 임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노력하면 뭐 해요? 누구하고 노력해요? 안 했지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최상목 대행이 두 분을 임명해 줌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정상화됐고 또 8인 체제에서 윤석열을 8 대 0으로 파면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총리는 보수에서 공적이에요. 안 하려면 3명 다 안 해야지 조한창……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그분들도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2명을 임명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 만들었다. 그래서 보수에서 공적이에요. 그리고 진보에서는, 야당에서는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여야가 합의해야 인정한다 하는 법이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증인 최상목** 한덕수 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헌정사의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한덕수 대행은 돌아와 가지고 마은혁, 마용주 다 임명해요? 여야 합의했나요? 안 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박지원 위원** 그게 궤변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최상목**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기재부장관, 제가 앞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복장이 터지겠어요. 윤석열 존경합니까? 대학 다닐 때 같이 다녔잖아요. 그때 형이라고 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대학 다닐 때 몰랐습니다.

○이성윤 위원 몰랐어요?

○증인 최상목 전혀 몰랐습니다.

○이성윤 위원 ‘상목아’, ‘상목아’ 하는 거 맞아요? ‘상목아’, ‘상목아’ 이렇게 부르는 거 맞아요?

○증인 최상목 아닙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 존경합니까?

○증인 최상목 ……

○이성윤 위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가 뭐냐? 아시지요?

○증인 최상목 예.

○이성윤 위원 바로 남 탓했기 때문에 그립니다, 국민 탓, 국회 탓, 야당 탓. 그것 때문에 파면된 거예요.

지금 답변 내내 남 탓이에요. 채권 왜 샀습니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왜 마은혁 임명 안 했습니까? ‘전임의 의견을 받아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심지어, 휴대폰을 왜 바꿨습니까? ‘휴대폰이 고장 나서 교체’. 휴대폰이 잘못했어요.

왜 남 탓을 그렇게 합니까? 국정 내내 그렇게 했습니까? 직무대행 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남 탓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뭡니까? 하루 종일, 오늘 오전 내내 남 탓하고 심지어 휴대폰까지 탓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할 정도까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이 진압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남 탓을 그렇게 해요?

○증인 최상목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오늘 보니까 최상목 장관이 파면돼야 할 이유가 똑같습니다, 윤석열하고. 윤석열은 남 탓하다가 파면됐어요. 최상목 장관도 남 탓하다가 파면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마은혁 임명 안 한 것 이런 것 다 남 탓하다가 끝난 거예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경찰청, 서울청장대행.

○증인 박현수 예, 서울청장대행입니다.

○이성윤 위원 서울청장대행을 임명하셨지요? 올해 2월에 임명하셨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직접 임명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결재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서울청장 언제 만났습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언제부터 알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최상목 기획재정부에 그때 출입을 했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정보 외근 형사 때부터 만난 거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때 알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게 몇 년 됐습니까? 별써……

그때, 안 때가 몇 년도입니까?

○**증인 박현수** 2006년도에 처음……

○**이성윤 위원** 2006년도, 지금까지 교분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박현수 지금 현재 서울청장직무대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분이 12·3 내란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증인 최상목**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어느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12·3 내란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을 만나고 계엄이 선포되고 그려자 조지호 청장이 박현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박현수 치안……

○**증인 박현수** 경찰국장이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경찰국장이었지요? 경찰국장이 다시 경비국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2분 후에 바로 국회가 전면 봉쇄돼요.

박현수 국장, 그때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증인 박현수** 그 부분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당시에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고 제가……

○**이성윤 위원**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증인 박현수** 집에서 출근을 하면서……

○**이성윤 위원** 안부 전화 했습니까?

○**증인 박현수** 집에서 출근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경찰국장으로서……

○**이성윤 위원** 됐습니다.

계엄이 긴박한 상황에서 안부 전화 했다고요?

○**증인 박현수** 안부 전화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윤 위원**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입니다. 이런 종사자를 갖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지요?

○**증인 박현수** 예, 참고인 조사를……

○**이성윤 위원** 조사받고 있지요? 입건됐지요?

○**증인 박현수** 참고인 조사를 3회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수사받는 자는 직위해제해야 돼요. 그런데 최상목 장관은 대행 시절에 내란 수괴를 위해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저런 경찰청 경찰국장을 바로 서울경찰청장대행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승진시켜서. 직위해제해도 부족한 사람을 승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계속 내란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알 박기 인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최상목 장관이 바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최상목** ……

○**이성윤 위원** 말씀해 보세요.

○**증인 최상목** 아니,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찰청장……

○**이성윤 위원** 대행이 어떻게……

○**증인 최상목** 경찰청장직무대행과 행안부장관직무대행이 제청을 했기 때문에 결재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 탓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남 탓하는 거예요, 또 남 탓?

○증인 최상목 그러니까요. 이것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본인이 법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정을 해야지요. 또 남 탓하고 있어.

○증인 최상목 아니, 그런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윤 위원 바로 파면되어야 할 이유가 남 탓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최상목 부총리님, 지금 이와 같이 내란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국회에 불려 와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증인 최상목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몇 번째지요, 이것 하시는 게? 국정조사에서도 또 특위에서도 계속 국회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셨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셨듯이 내란 관련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무회의 과정에서 사전에 그 과정을 인지하는 경우,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는 부분이 드러난 경우, 그다음에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확인돼야만 내란의 관여나 내란의 방조라는 비난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F4 회의에서 쪽지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점검, 다음 날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답변을 다 하셨어요. 위증의 경고를 받으시고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 이전에도 아마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다른 데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금융위원장님!

○증인 김병환 지난번 국정조사 할 때 그런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증인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무회의에 가실 때 왜 와야 되는지 전혀 몰랐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무총리에 대해서 적어도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부총리에 대한 내용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사실상 대동소이한 부분 아니겠어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법무부차관님, 참고인으로 오신 두 분의 교수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사고와 궤위에 있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증인 김석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차이가 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유상범 위원** 다양한 견해가 있지요?

○**증인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러나 헌법적으로나 법률로써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떤 제한을 둬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증인 김석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제한을, 자제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와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결국은 권한 행사를 하는 대행의 입장에서는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사항, 대통령의 권한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조약체결권·국군통수권 이런 경우에는, 또 재의요구권 이 경우에도 제한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권한 행사는 또 모두 다 인정을 해요. 맞지요?

○**증인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대통령과 같은 권한 행사를 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이 부분에 관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궤위가 됐을 때 대행이 그 권한을,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자제가 있어야 되느냐는 결국 재량적, 가치 판단적, 그 당시 대행자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 제 판단인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석우**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궤위와 사고를 구분해서 궤위의 경우에는 폭넓은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도 있고 또 일부 설은 궤위와 사고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적극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상범 위원**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권한쟁의에

의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나 임명, 그대로 재판관을 임시로 지명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부분도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곧……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총리께서 변론 종결됐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미 좀 더 자제를 한 것 아니겠어요?

○**증인 최상목** 그래서 국무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제가 너무 서두르기는 어려웠습니다. 국무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같이 끌고 가면서 판단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신문해 주시지요.

○**박범계 위원** 시작하기 전에 임지봉 교수님……

짧막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 임지봉** 예.

○**박범계 위원** 교수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김선택 교수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사기, 헌법 농단을 하고 있어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성이 어제, 오늘 평의가 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지명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은 지명 행위에 가까운 것이고 지명 행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면 임명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고 이런 가상적 정치적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농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의해서 휘둘려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참고인 임지봉** 헌법 농단이자 유린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박범계 위원** 유린이지요?

○**참고인 임지봉** 예.

○**박범계 위원** 일국의 총리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기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이것은 마땅히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가처분을 내려야 함이 헌법을 보호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임지봉** 그렇습니다. 현재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님 또 한덕수 국무총리님 두 분 다 권한대행인데요. 이분들이 위헌 행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님 같은 경우는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한 석 달 정도 임명장을 안 줬고 현재에서 주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25일 동안 안 줬어요. 매일매일 위헌 행위, 위법 행위를 했는데……

○박범계 위원 매일매일 위헌·위법 행위……

○참고인 임지봉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공직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위헌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연구자로서 저는 이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소추를 해서 파면결정을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최상목 대행, 2월 27일 날 권한쟁의심판에 따른 재판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3월 4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정작 공식적인 국무회의에는 언급이 없고 구성원이 똑같은 간담회를 열었어요, 사전에.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 국무회의 작동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정식의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증인 최상목 제가 두 분을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재의요구권을 포함해서 모든 결정을 할 때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것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기구고 거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과 공식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논의 안 한 거예요. 간담회라는……

법대 나오셨지요?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에요. 법기술, 법꾸라지 같은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두 번째,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요? 본인이 재판관입니까? 본인이 판사예요?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7일 날 명백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행위だ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동안 이렇게 둉냈어요, 구속력 없는 가짜 국무회의 하고?

그리고 여야 합의 운운하는데 그러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 때의 여야 합의 공문 외에 권한쟁의심판 이후의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까, 별도로? 두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되고 그랬습니까? 다 변명이에요, 거짓말이고. 이게 오늘날 일국의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거짓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채 문제, 나라를 팔아 버린 겁니다. 나라를 팔아 버린 거예요. 시장에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2억 원에 가까운 장기 미국채를, 환율과 역으로 진행되는 바로 그런 것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다 이거예요. 거짓말, 위선, 더군다나 국익은 조금도 생

각하지 않는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지표는 또 어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뭘 잘한 게 있다고 미국에 갑니까? 최상목 대행 없어도, 최상목 부총리 없어도 경제 잘할 관료들 많이 있어요. 없는 게 나아요!

답변해 보세요.

○**김기표 위원**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증인 최상목**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올리면 제가 외화를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외국 국채를 샀기 때문에 환율의 문제는 잘못된 지적이시고 그다음에 한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김기표 위원이 그런 얘기 들어도 옳은 말씀이라 하겠어? 본인이 한번 들어 봐.

○**박범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5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큰 대(大)’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代)’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청개구리 대행들이었어요. 임명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임명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된다,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무법적 논리이고 근거도 없지만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장한테 보냈어요, 정계선, 조한창 등 임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에서 더더욱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는 않지만 마용주 대법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끙갠 거예요. 대법관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청개구리 대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위헌 행위다. 헌법재판소법 67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결정에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장관, 기속의 뜻을 아세요? 모르지요? 몰라서 그런 거지요?

○**증인 최상목** 뜻은 압니다.

○**위원장 정청래** 얘기해 보세요. 기속한다, 얘기해 보세요.

○**증인 최상목**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틀렸어요. 그건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몰랐구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속한다는 것은 남을 강제로 얹매어 자유를 빼앗는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얹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김선택 교수님께 시간을 나눠서 여쭙겠습니다. 1분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과면에 대한 현재 판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한대행이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1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김선택**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는 헌법적인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 들어 보니까 ‘사고와 궤위,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있는 모든 권한에는 명시적인 한계가 있고 또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거나 궤위됐을 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해야 될 권한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권한이 있어요. 권한대행은 타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아주 제한된 한시적인 기간만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궤위됐을 때는 차기 정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임명권 행사 때 차기 정부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선취해서, 침탈해서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법리를 놓고서 대국민에 중계되는 국회의 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곽규택 위원** 참고인 생각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김선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임지봉 교수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헌법학회 학자들의 다수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임지봉** 현상 유지설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총리 입장에서나 혹은 국무총리 입장에서 대행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내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그것은 국회에서 선출해 놓은 분을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현재는 또 그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권일뿐만 아니라 헌법 111조 3항에 의해서 헌법적 의무가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에 마지막 참고 자료로 조갑제, 정규재, 김진 이런 보수 인사들의 의견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금까지 입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서는 진정한 정통 보수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언제 그렇게 보수를 생각해 줬어요?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좋으시겠어요, 그쪽 넘어가시더니.

**○유상범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인격 모독적으로.

**○박준태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제가 얘기할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말을 그렇게 하니까 말을 하지요. 항상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아무렇게나 해.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분들조차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진정한 보수가 사라지고 극우만이 지금 날뛰고 있다고. 이분들의 충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국민의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출석 관계도 있기 때문에 3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대정부질문도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국회법 제5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승인을 받아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후 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출석하셨으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용 총재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창용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증인 이창용

○위원장 정청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들, 보충시간은 3분으로 하시고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3분을 마치고 5시 전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재보충질의하실 분들은 그때 하시면 좋겠고, 3분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최상목 증인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계시지요? 어떤 회의인가요?

○**증인 최상목** 일단 다음 주에 제가 미국 가는데 미국 베센트 장관이 통상 협안 관련된 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자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또 준비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증인 최상목**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정말 어쩌면 국가의 경제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계신 분이 그 아까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창용 증인님, 내일 또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심정이 어떠세요?

○**증인 이창용** 끝나고서 내일 회의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고금리로 우리 민생이 정말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경제 수장들이, 무슨 우리가 기재위도 아니고 정무위도 아니고 이 법사위 이 자리에,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또 무슨 탄핵소추와 관련된 일로 두 분 경제 수장께서 와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정말 국회에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강하고 정말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이 탄핵이 연발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번 최상목 부총리,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이것도 30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탄핵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다 명분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재판을 받는 분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김영철 검사, 대북송금 관련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사건 관련 염희준·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 기가 막혔지 않아요? 또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줄탄핵, 거기다가 총탄핵까지 겹박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내란죄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를 무너뜨리면 폭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내란죄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탄핵, 아까 말씀드렸어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미 대행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도 또 탄핵을 겹박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스토킹 아닙니까? 바로 국회의 탄핵, 줄탄핵, 방탄 탄핵, 총탄핵, 심지어 스토킹탄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형법에도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분명히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국회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답답하실 것이고.....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증인 여러분들께서 이게 과연 국회의 참모습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의아하실 겁니다. 제발 우리 법사위 좀 정신 차리고 국민들 앞에 제대로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국민을 위한 일을 더 하겠다

는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장관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다음 주에 미국에 출장을 갑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이 시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에 관련된 그런 협약이나 아니면 회담이나 이런 것은 자체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좋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증인 최상목 다음 주의 출장은 G20하고 IMF 출장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제가 거절할 수는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시기보다는 새 정부에 미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국익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까?

○박준태 위원 무슨 얘기인가요?

○박범계 위원 위원장이 한 말씀 하면 좀 새겨듣고 진중하게 들을 줄 알아야지!

○송석준 위원 국정을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무슨 위원들이 그렇게 위원장 한 말씀에.....

○곽규택 위원 진중하게 듣고 있어요.

○박범계 위원 경박스럽게!

○유상범 위원 아이고, 그 정도는 박범계 간사로 충분해.

○박준태 위원 우리도 여기 야단맞으러 온 거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다 했어요, 밀?

○송석준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다 하셨냐고.

○송석준 위원 더 할까요?

○위원장 정청래 더 해 보세요.

○곽규택 위원 진행하세요.

○송석준 위원 박범계 위원님!

○위원장 정청래 더 해 보세요.

○송석준 위원 국정을 마비시키지 맙시다. 국정을 방해하지 맙시다.

○박범계 위원 조용히 해.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이 탄핵되고 과연됐으면 좀 자중하실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쪽 당 당원이지요? 좀 염치들이 있으십시오. 염치가 있어야지요.

○박준태 위원 그쪽 당이 뭡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검찰에서 수사도 잘하시고 법도 엄격히 적용하셔서 금융감독

원장이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사도 하고 엄격한 법률가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당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이복현** 금감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지위에 있는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김기표 위원** 조심스러워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제가 그냥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복현** 어쨌든 굳이 개인적인 그것을 물으신다면……

○**김기표 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증인 이복현** 당시에는 저도 법률가로서 6인 헌법재판소 체제가 그대로는 작동이 안 될 것 같고 2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숨통을 트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체제가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기표 위원** 1명이 임명 안 된 것을 묻습니다.

○**증인 이복현** 어쨌든 저는 2명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1명이 임명 안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증인 이복현** 당시에는 그냥 한덕수 총리께서 그전에 어떤 동의……

○**김기표 위원** 법률가로서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나요?

○**증인 이복현** 하여튼 정무적인 결단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건 법률적인 문제지 정무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권한쟁의에서까지 국회의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률가로서 묻습니다.

○**증인 이복현** 그런데 제가 외람됩니다만 헌법재판 절차라든가 헌법상의 판단이 사실은 완전히 고유한 기술적인 법률과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 그렇게 확실히 구분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기표 위원** 권한쟁의에서 결정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기속한다는 말은 바로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말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복현** 그런데 임명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재가 어떤……

○**김기표 위원** 시기라는 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증인 이복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김기표 위원 그러면 언제 해야 되지요,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나오면?
- 증인 이복현 어쨌든 그 취지에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기표 위원 이십 며칠씩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 증인 이복현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취지는 아닌데……
- 김기표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셨습니다. 본인 의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 26일씩 임명 않는 게 맞습니까? 법률가로서 묻는 겁니다,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 증인 이복현 그런데 임명을 하시려고 되게 고민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기표 위원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어떠한 거냐고 묻습니다.
- 증인 이복현 어쨌든 제가 이십여 일이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 김석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계엄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특별검사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등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이든 법률 위반 사유가 없다고 하든, 있다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결정이 다 내려진 것은 알고 있지요?

○증인 김석우 예.

○장동혁 위원 그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그러면 계엄 관련된 것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고요. 재판관은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은 2명을 임명했고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론 도장 찍은 문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 ‘그러나 그 합의는 파기가 됐다.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3명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2명은 임명을 했고 여야 합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1명에 대해서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위법 사유로, 소추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범위가 적거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고, 물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의 기속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미친다고 법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증인이 보시기에는 이 새로운 쟁점, 아니면 현재가 달리 판단해야 될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이 소추 사유에서 보여지십니까?

○**증인 김석우** 약간은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정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결정과는 좀 약간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고, 다음에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5명의 재판관은 이것은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위법이 아니라고 한 취지는 실질적 기간과 구체적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이 된 지 3일째 됐을 때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시한이 없었다라는 부분이라서……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도 있고 가처분 신청도 있었다는 점도 추가로 고려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날짜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김석우**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최상목 증인,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혹시 답변 못하신 것 있으면 추가로……

○**증인 최상목**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금감원장님!

○**증인 이복현** 예.

○**이성윤 위원** 나오신 김에……

올해 4월, 이번 4월 초에 도이치모터스 공범 9명이 전부 유죄판결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확정됐습니다.

○**증인 이복현** 예, 대법원……

○**이성윤 위원** 그러면 금융 수장으로서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수사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이복현** 그런데 그 건은 외람됩니다만 최근에……

○**이성윤 위원** 아니, 금융 수장으로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또 금감원으로서 이건 당연히 조사를 다시 하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복현** 어쨌든 검찰에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공범들이 확정됐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종호 등이 관련된 삼부토건 사건 지금 조사 중에 있지요?

○**증인 이복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10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올해 4월 말까지 끝낸다 했

는데 지금 김건희, 이종호 수사 중에 있습니까? 조사 중에 있습니까?

○**증인 이복현**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을 저희가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증인 이복현** 저희도 사실 사후에 어쨌든 저희가 한 조사 자체가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최상목 장관은 국회가 지명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하고 또 헌법위반을 저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혐의가 짙은 박현수 증인을 굳이 승진까지 시켜 가면서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를 시킵니다. 정말 이런 수사 받는 사람을 직위해제를 시키지 못할 망정 승진시켰다, 이것은 내란 세력 알박기 인사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현수 대행님!

○**증인 박현수** 예.

○**이성윤 위원**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용산 대통령실 근무했지요? 국정상황실장이었지요?

○**증인 박현수**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행정관이었습니까?

○**증인 박현수**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때 그 당시 용산경찰서의 수사하고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보고 받았지요?

○**증인 박현수**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보고 안 했다고요?

○**증인 박현수** 예, 기억이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기억이 없어요?

○**증인 박현수**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거기서? 경찰에서 나가 가지고 경찰 것 사건 보고 하려고 간 것 아니에요?

자, 그러자 처음에는 김찬수 영등포서장도 청찬하던 수사가 갑자기 용산에 보고되자마자 용산에서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이 해체가 돼 버려요. 이것은 채 해병 사건에서 윤석열 격노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용산서에 전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현수**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요.

○**이성윤 위원** 마약사건 윤석열·김건희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현수** 용산에 전화한 바도 없고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법무부차관님!

○증인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오전에 대행의 권한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오전에 나오신 교수님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설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 반대설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 법사위 상임위원회에서 한쪽 의견 가진 사람만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편파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고와 궤위의 경우에 현재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궤위의 경우에 현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예로 드는 게 헌법개정 발의권 다음에 국민투표 부의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 외에는 사실상 해석이 갈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총리님 있지요?

○증인 최상목 예.

○조배숙 위원 지금 보니까 부총리님을 무슨 환율 상승의 국면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달러를 매입해서 국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하신 겁니까?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증인 최상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외화를..... 작년에 외화예금 상태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외화 국채를 매입하는, 그러니까 같은 외화인데 예금에서 국채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환율 상승이나 이런 것은 아니.....

○조배숙 위원 작년 8월이지요?

○증인 최상목 예, 작년 8월이고요.

○조배숙 위원 8월이기 때문에.....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율 변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전 이가 있지만 미국 국채에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상충 소지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다 신고까지 하셨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이해상충 여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것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재정에 관해서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국가경제 부분하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최상목**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테무라고 아시지요, 테무? 온라인.

○**증인 최상목** 예.

○**조배숙 위원** 지금 굉장히 저가로 공세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도 아주 초토화가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증인 최상목**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예, 그렇게 하세요.

○**증인 최상목** 소상공인께서 어렵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많은 부채를 가지셨는데 그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 부담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노력과 또 금융 부담을 못 버티신 분이 재기를 해야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매출이 떨어져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시적인 것이라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분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맞춤형 그런 대책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오늘 청문회와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지금 질의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혹시 총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정책에 관한 겁니다—혹시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혹시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이창용** 내일 금통위가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관돼서는 저희가 2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렸었고요. 지금 금리가 인하하는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내일 금리 인하 발표합니까?

○**증인 이창용**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냐하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하 사이클이 ‘금리 인하 하나’ 이렇게 또……

○증인 이창용 인하 사이클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부총리님!

○증인 최상목 예.

○김용민 위원 비상계엄 반대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증인 최상목 일단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잘못됐다고?

○증인 최상목 예,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파면결정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최상목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 안 했어요?

○증인 최상목 저도 그걸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민 위원 무슨 노력을 했어요? 임명을 했어야지.

○증인 최상목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작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장난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에요? 의결 사항이에요? 아니지요? 말씀해 보세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까?

○증인 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증인 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임명하면 됐지요, 왜 안 따랐냐고요.

○증인 최상목 아니, 저한테 왜 안 따랐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현재 제 판결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계엄 반대했다고 하는데 행적이 수상합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보십시오. 이날 보면, 다 좋아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F4 회의 개최 이것도 의문은 제기되지만 어쨌든가 행적들이 했다는 것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비상계엄을 반대했으면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 국무회의 소집을, 해제를 위한 소집을

했을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어야지요. 왜 안 하고 집에 갔습니까?

○증인 최상목 2시 3분에 저한테 온 문자는 국무회의실로 모이라는 것이고 그 회의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해제의……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하지 않아서 저는 비상계엄하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저희 1급 회의에서 1급들과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시고요.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그것을 당연히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서 가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해제 의견을 내고 왔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논리도 안 맞고 일관성이 없어요.

금감원장님, 지금 보니까 삼부토건 관련해서 이번 달 안으로 조사 끝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제대로 조사 없이 성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인 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가 됐건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특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합니다.

○증인 이복현 특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조사의 적정성 자체가 검증 대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 처리의 기준 플러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민 위원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금감원장님, 신변에 관한 거기 때문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증인 이복현 예.

○위원장 정청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했고 사의 표명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짐 싸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증인 이복현 어쨌든 제가 공직자로서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맞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맞는데 그 직후에 라인을 통해서 제 입장은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께 보고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위원장 정청래 제가 묻는 것은 사의 표명을 했는데,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됐느냐 수리가 안 됐느냐 이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짐 싸서 가라’ 하는 것은, ‘그만둬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증인 이복현 제가 제 입장은 표명한 직후에 상호관세 이슈가 터지고 그와 관련된 대

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F4에 계신 다른 장관님이나 총재님께서 업무 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사의 표명은 거두어들이고 계속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거지요, 지금?

○증인 이복현 저는 거두어들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수리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시는 건 하시는 거네요?

○증인 이복현 예.

○위원장 정청래 열심히 해 주세요, 기왕에 하시는 것.

○증인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남발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시기가 통상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요.

최상목 부총리님, 다음 주에 미 재무장관이 먼저 요청해서 같이 방미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내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지금 일단은 대행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회의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총전략을 짜면 제가 장관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저하고 산업부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 관련 장관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까지.

○주진우 위원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서…… 오늘 속보 뜬 것 보니까 미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한민국과 일본 등 한 5개국에 대해서 우선협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증인 최상목 예, 베센트가 어제 대외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탄핵소추를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미 재무장관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대참을 합니까, 지금 만약에 직무가 정지된다면?

○증인 최상목 글쎄요, 제가 가정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차질이 빚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 열어 가지고 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정적인 게 아니라 직무가 정지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가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국익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최상목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탄핵을 또다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익에 너무 손해가 많은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협상을 상대 측에서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화 상대방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유를 보면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뻔한 사건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 또 여야 합의 주문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또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똑같은 쟁점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돼서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즉시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금 기사에 뜬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오늘이지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 재판이 있었나 봅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불러 줬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네요. 결국은 현재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만 체포 대상 14명을 실제로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그걸 불러 줬다 이런 증언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언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매번 질의할 때마다 그렇게 논평하실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게 지금 최상목 탄핵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에서 저지하지 못했다면…… 그 체포 대상 14명에는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거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비상계엄을 어쨌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가적 비극을 막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장관께서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반성적 차원에서 태도를 하시라 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뜬 속보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최상목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도대체 못 보고 항상 변명거리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저는 최상목 장관이 탄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조사받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있지만 탄핵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공수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증인 최상목** 예, 일단 그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고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박균택 위원** 대통령 산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 산하였는데 경호처가 법관의 영장집행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단 범죄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 이걸 무시한 채 그 범죄를 방관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수처에서 이 역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증인 최상목** 예. 그런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박균택 위원** 예.

○**증인 최상목** 공수처법 조문은 제가 정확히 지금 번호는 잊어 먹었습니다만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공수처랑 어떠한 일체의 협의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문이 두 번 왔는데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박균택 위원** 장관님,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놔둔 규정인데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규정으로 그걸 써먹습니까?

○**증인 최상목** 아니요, 그게 아니……

○**박균택 위원** 왜 도대체 그렇게 자꾸 사람이 그렇습니까?

○**증인 최상목** 아니,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박균택 위원** 존중받을 얘기를 좀 하세요!

○**증인 최상목**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수사의 독립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지 범죄를 말리지 않는 본인의 그런 근거로 그걸 활용을 합니까?

○**증인 최상목**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할 때 대기업 16개 업체로부터 486억 원 받은 혐의로 뇌물죄 특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돈을 뜯어낸 분이 바로 최상목 당시의 경제비서관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인 최상목** 저는 지금 뜯어냈다는 표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수금 실무자였다는 것 인정합니까?

○**증인 최상목** 그건 아니고요. 옛날 MB 때 미소재단처럼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저는 정상적인……

○**박균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나와 있는, 본인이 화를 내면서까지도 수금 역할을 하고 강요를 하고 기업들이 짜증을 내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그걸 강행했다는 이 판결문 내용, 검찰의 공소장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증인 최상목** 검찰의 공소장 중에서 그 표현……

○**박균택 위원** 왜 본인이 아직도 기소가 안 되고 있었을까요? 윤석열 검사가 봐줬던 것 맞지요?

○**증인 최상목** 그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수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박균택 위원** 윤석열 검사장이 이어서 또 잤잖아요?
- 증인 최상목**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박균택 위원** 윤석열 특검팀장, 윤석열 검사장이 끝끝내 증인을 봐준 것 아닙니까?
- 증인 최상목**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 박균택 위원** 이것 공소시효가 앞으로도 5년이 더 살아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 증인 최상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균택 위원** 자중하십시오.
-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방금 전 제가 기사 하나를 소개시켰더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반발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계엄의 체포명단은 여당·야당 대표가 다 체포명단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체포하려고 그랬고. 체포하면 얌전히 호텔방에서 재웠겠습니까? 온갖 고문·폭행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귀당의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그 대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십니까? 이 상황을 듣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비극 문제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환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그걸 반발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국가의 재앙·비극·참극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재발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도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 또 파면결정도 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쟁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탄핵 조사 청문회 운영에 집중해 주시고 회의 중에 기사 검색 좀 그만하세요.

- 위원장 정청래**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우려먹고 본회의에서도 우려먹고 온갖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예요. 특이한 기사가 아니에요, 전혀.

이창용 총재님, 전에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날 F4 회의 참여하여 가지고 논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증언하시고 하셨지요?

- 증인 이창용** 그렇습니다.

- 곽규택 위원** 오전에 안 계실 때 다른 참석자분들께는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당시 회의 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준비하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논의하거나 그런 논의를 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증인 이창용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날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습니까?

○증인 이창용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이었는데 하나는 오전에 주식시장을 열 건지, 그때 가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개장 여부를 7시에 다시 만나서 판단하기로 논의를 했고 7시에 다시 모일 때까지 각 기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자고 논의하고 끝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자리에서 당시 최상목 부총리께서 무슨 쪽지를 내밀거나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인 이창용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여러 차례 다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그것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참여하셨던 참고인들이 오후 되니까 다 안 계셔 가지고 질문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법무부차관님,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에 참고인 한 분, 모 대학 교수라고 하시던데 참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새로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면 안 된다 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대행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 대통령에게까지 적용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지요?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의무를 가지고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도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요.

4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임이 명백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을 또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인해서 나가실 것이 뻔한데 그 두 분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상 유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석우 예, 결원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반드시 현상 변경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최상목 장관!

○증인 최상목 예.

○서영교 위원 핸드폰을 왜 바꿨어요?

- 증인 최상목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바꿨습니다.
- 서영교 위원 어떻게 고장이 났어요?
- 증인 최상목 먹통이 됐습니다.
- 서영교 위원 왜 먹통이 돼요?
- 증인 최상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먹통이 돼요?
- 증인 최상목 예.
- 서영교 위원 먹통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 증인 최상목 아니요, 화면이 안 떠 가지고요.
-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화면이 왜 안 떠요? 물에 빠지면 화면이 안 떠요?
- 증인 최상목 아닙니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그렇지 않지요. 고장이 났다는 걸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사람하고 논의해 봤거든요. 요즘 핸드폰이 물에 빠져도 먹통이 안 되고 그런데 왜 먹통이 돼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핸드폰 안 바꿨다면서요. 그런데 12월 7일 날 바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2월 3일 날 계엄이 났고 12월 7일 날 바꿨으니까, 그리고 안 바꿨다고 했으니까 위증이고 고작.....

요즘 어느 핸드폰이 6개월 만에 먹통이 돼요? 6개월 만에 먹통 된 적 있어요?

법무부차관, 핸드폰 바꿨어요?

- 증인 김석우 최근에 바꾼 사실은 없습니다.

- 서영교 위원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지요? 바꾸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할게요.

그다음에, 그 당일 날 F4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한국은행 총재, 물어볼게요.

뭐요? 비상계엄이 10시 25분에 발표가 됐는데 내일 오전 중에 주식시장을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 논의해요?

- 증인 이창용 예, 논의합니다.

- 서영교 위원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당연히 내일은 주식시장을 열어야지요. 계엄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증인 이창용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만일에 굉장히 크게 혼들릴 경우에는 오히려 닫아야 됩니다.

- 서영교 위원 여보세요, 크게 혼들리지 않게 뭘 했어야 돼요? 국회에서 해제시키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최상목 대행? 안 맞지요?

- 증인 최상목 예.

- 서영교 위원 안 맞으면 국회가 빨리 이것을 해제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비상계엄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했어요.

- 증인 최상목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그다음 들어 보세요.

○**증인 최상목** 그러니까 헌법기관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일도 있지만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저희들이 할 일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보세요. 그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막아야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시키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해제시키면 되는데 다음 날 것까지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비상계엄이 계속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각 기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제시킬 것을 고민해야지. 이 비상계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 여러분의 본심이 다 드러나온 거예요.

○**증인 이창용**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할게요.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신다고요?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한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물어볼게요.

한국은행 총재,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요? 국민이 살기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라도 ‘나는 사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오늘 표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요. 최상목 장관,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표정이 뭡니까? 아니, 표정이 지금…… 어제 내가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래요, 눈이 한쪽으로 흘겨보듯이 하고. 지금 여러분이 왜 표정이 막 이렇지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과면당했고 경제 다 망가졌으면 사죄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채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이따 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장관님!

○**서영교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자기 거나 해.

○**송석준 위원** 오버하지 마세요. 자꾸 오버해.

○**위원장 정청래**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요.

최상목 장관님, 진짜 괘씸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경제 수장이지요?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재벌 총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영향을 받아서 주식이 떨어질까 봐.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삼성 최신 갤럭시 폰 S24 울트라가 6개월 만에 먹통이 됐다고요? 그러면 삼성 갤럭시 폰 누

가 사겠습니까, 6개월 만에 먹통 되는데?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지요, 아무리 거짓말도 좋지만!

○증인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뉴스에요 식료품 같은 경우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 회사는 완전 비상 걸리고요 반환 소송 일어나고요 이래요. 그런데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삼성 최신 핸드폰이, 보니까 2024년 6월 24일 날 바꿨는데 그것이 6개월 만에 먹통이 나 가지고 12월 7일 날 다시 바꿨다고요?

○증인 최상목 예, 그 고장난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삼성 핸드폰 직원들이 이거 보면 놀라 자빠지겠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고장 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장 난 걸 증명도 안 했으면서 거짓말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먹통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합니까?

○서영교 위원 경제 수장이, 그것도.

○유상범 위원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위원장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송석준 위원 소비자의 행위를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법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본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삼성전자 핸드폰에 악영향을 끼칠지 아무 생각 없이 국익 침해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까 하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그래?

○위원장 정청래 참으로 한심하고 패션합니다.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개인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간섭하지 마세요. 법사위의 관할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세요, 국회법도 모르면서.

○송석준 위원 진짜 낄 때 끼세요, 법사위원장님. 소비자의 소비에 왜 간섭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 최상목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상범 위원 아니, 말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뭐 뒤늦게 그래.

○박은정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송석준 위원 선배들한테 좋은 것만 배우세요, 큰소리 배우지 마시고.

○박은정 위원 우선 12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했습니다.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최상목 당시 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두 사람만 임명을 하면서 ‘여야 합의가 1명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로 최상목 대행은 선별하여 임명

할 수 없다,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3월 24일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벌금형도 없습니다. 3월 4일 날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유죄 선고를 받을 겁니다.

공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간담회에 있었습니까, 본인, 그 자리에?

○증인 최상목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최상목 증인한테 묻는 겁니다.

이완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인 최상목 제가 어떤 분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분들이 일단은……

○박은정 위원 임명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까?

○증인 최상목 아니요, 그러니까 존중은 하는데 그 시기……

○박은정 위원 존중하면 임명하는 게 맞고요.

○증인 최상목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자.

○박은정 위원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위헌결정이 났는데!

○증인 최상목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총리께서 돌아오실 거라는 그런 기사가……

○박은정 위원 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위헌결정이 나면 임명해야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증인 최상목 아니, 그때 무슨 의견이 있었냐고 물어보셔서 그 의견을……

○박은정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증인 최상목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 물어보시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그 간담회에 참여해서 마은혁 임명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대세요. 전부 공범입니다.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법무부차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마은혁 임명하지 말자고요?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석우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은혁 임명하지 말자고 의견을 낸 사람 중에 법무부차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최상목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범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본인은 직무유기……

○증인 최상목 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은정 위원 본인은 직무유기 정범이고요, 고발됐습니다. 나머지 공범이 누구인지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석우 차관, 그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증인 김석우 예,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냈지요?

○증인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위원장 정청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증인 김석우 제가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두 번째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확립된 관행은 아니다. 세 번째는 권한대행도 자격이 있다, 네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게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면 변론 개신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론 개신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법 공부 헛것 한 것 같아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범계 위원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예?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증인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제 발언을 정정합니다. 법을 잘하셨군요.

임명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지요?

○증인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봐요, 짧게 얘기하면 될 건데 뭐 하나 둘 셋 넷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래! 하여튼 김석우 진짜……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걸 왜 화를 내고 그래, 그것 가지고.

○박범계 위원 아이고, 진짜……

○유상범 위원 성의 있게 답을 해도 뭐라고 그러고.

○위원장 정청래 아니, 김석우 차관이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러더만. 헛공부했다고 비난하더니 왜? 끝까지 안 듣고.

○위원장 정청래 아니, 말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런 거지요.

○유상범 위원 잘 들어야지. 잘 안 듣고……

○서영교 위원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김석우 차관은.

○박범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1 2 3 4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나 이 말이에요, 지금.

○유상범 위원 답하는 것까지 탓을 해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땀생각 못 하게……

○위원장 정청래 아니, 다시 수정하고 잘했으면 잘 끝났는데 왜 또 이렇게 두 분의 간사들께서…… 두 분 간사, 진정해 주시고요.

○박범계 위원 아무튼 김석우 차관 말 좀 줄여요, 좀!

○위원장 정청래 잘하셨어요.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오늘 처음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하세요.

○**김영환 위원** 예.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되게 점잖으신데 여기는 시끄러워서 죽겠네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오시자마자 결례하시면 안 되지요. 예의를 지키세요.

○**김영환 위원** 송석준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저기 멈춰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으레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세요.

○**김영환 위원** 최상목 증인, 헌법 87조 2항이 뭐지요?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어요. 그러면 보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은 지금 있는 거예요. 윤리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탄핵소추 비용을 국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억 5000. 제가 비상계엄 여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한국은행 총재님, 내수 소비 추락 등으로 어떻게 예견했어요? 4/4분기 0.2% 하락, 25년도 0.2% 하락, 1.6~1.7% 얘기하셨지요?

○**증인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 돈이 얼마예요? 제가 원계열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4/4분기, 12월 달 2.2조 그다음에 25년도분 9.2조입니다. 11.4조, 이게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

그다음, 그때 주식시장 114조가 사라졌어요, 시총이. 투자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114조가 날아갔어요. 장관으로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비상계엄 여파로 114조가 서민들의 주식에 꽁꽁 묻어 놓은 돈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

장관님, 환율은 어떻게 튀었어요, 그날부터?

○**증인 최상목** 그날 1402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60~7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작년 23년도 국채, 미국채 매입할 때 국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금리에 국채 가격은 저점에서 흐르고 있고, 환율 튀었으면…… 미국채 산 것 아닙니까? 달러 아닙니까? 달러 자산……

금감원장님,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 본 적 있어요?

○**증인 이복현**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미국채 가져 본 적 있어요?

○**증인 이복현**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금융위원장님, 미국채 가져 본 적 있어요?

○**증인 김병환**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 본 적 있어요?

○**증인 김병환**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달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 본 적 있어요?

○**증인 이창용** 제가 IMF 근무할 때는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월급으로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는 근무했으니까.

○**증인 이창용** 그런데 자산투자도 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경제 수장님, 외환관리 최종 수장입니다. 신호 메신저가, 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채에 투자했어요. 신호가 어떻겠어요? 지금 채권투자 적정한 시기다, 강남에서 봄 불고 있다, 나도 하자 이런 식으로 보내 주는 것 아니에요? 외환관리 당국자, 이해충돌이에요. 채권시장 다 알고 있고 금리 다 알고 있고……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김영환 위원** 국채 이용되는 것 다 알고 있고 저점에서 흐르는 것 다 알고 있고. 장관이 그것을 사셨어요, 지금.

환율 뒤었을 때 손뼉으로 박수쳤어요, 아니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둘 중의 하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최상목**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나도 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예, 이건 답변하세요.

○**증인 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2018년부터 가지고 있던 외화 예금으로 외화 국채를 산 겁니다.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해야지요!

○**증인 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이득을 본 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 환율에 대해서 이득 본 게 없다고요, 지금?

○**증인 최상목**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최소 10% 이상 이득 봤어요, 환차익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김영환 위원님, 질의는 끝났고요.

답변시간만 보장하겠습니다.

○**증인 최상목**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직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제가 이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의사결정이나 공직윤리상 어떠한 것도 거기에 준수하지 않고 한 적이 공직생활 40년 동안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던 외화, 제가 민간에서 해외에 나가 가지고 1년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면서 생긴 외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 유학 준비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외화 예금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증인 최상목** 그런데 제가 공직에 취임했다고 그걸 팔아야 되냐는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장관님!

○**김영환 위원** 팔겠다고 했잖아요, 팔겠다고.

○**증인 최상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팔았다가 다시 산 거잖아요.

○**증인 최상목** 아니에요. 그것 외화 상태였습니다, 계속.

○**위원장 정청래** 최상목 장관님!

다른 분들은……

○**서영교 위원** 안 팔았어, 그때?

○**증인 최상목** 팔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본인한테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잖아요.

○**증인 최상목** 외화 상태였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잘 들으세요.

국회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요 외제차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최상목** ……

○**위원장 정청래** 지금 300명 국회의원 차량은요 단 1대도 외제차가 없습니다. 다 국산 차예요. 그거는요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개인 최상목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뭣 하러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나오지도 않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참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오해받을 소지를 한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바득바득 잘못한 게 아니라는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매를 버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지요. 불법 아니지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제가 계속 같은 이유로 지적하는데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손해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게 공직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합니까, 답변 태도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준태 위원** 이창용 총재님,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요 ‘국무위원들, 특히 경제 수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 또 형사 고발 조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증인 이창용** 개별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박준태 위원** 총재께서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 하셨던 데요,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에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서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지요?

○**증인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게 당시에 ‘민주당의 출탄핵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어땠습니까?

○**증인 이창용** 그때 대행의 대행으로 가게 되면 해외에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이요 국제사회의 평가뿐 아니라 국내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업과 금융과 시장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요청을 수용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창용** 원인에 관계없이 경제적·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게 될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박준태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경제팀이 무능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민생 또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것 이지 지금 우리 경제팀이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성장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쏟아내고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나 발표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판 만들고요. 그래서 집값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청년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불과 3년 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실제로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집값 통계 조작해 가지고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막 정부가 발표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 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하고 또 국가신인도 유지하고 가계부채 많이 줄여 가지고요 겨우겨우 안정화시킨 것이 지금의 경제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총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로서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정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부총리, 저도 해 봤는데요. 장관도 국회만 없으면 해 먹을 만해요. 국회 의원도 선거만 없으면 해 먹을 만하고.

장관이니까, 이하부정관 아시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않는 거예요. 그것 국채 했다고 그러면 잘못 아니에요? 사과하면 되는 문제를 그렇게 건건이 변명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증인 최상목** 예.

○**박지원 위원** 오늘 한덕수 대행 어디 가셨어요?

○**증인 최상목** 오늘 아마 조선산업 가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요, 지난주 8일 날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후보 놀이를 시작했다. 왜? 이완규 법제처장을 현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윤건희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제 본회의장에는 아무 소식도 없이 안 나왔어요. 딱 윤석열이 국회 경시하듯 다 배운 거예요. 어제는 느닷없이 또 자동차 관계로 해서 기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아마 오늘은 조선 갈 거다. 그래서 거제나 울산 갈 거다’ 했는데 울산 갔네요.

지금 이 판국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 대권 놀음 할 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최상목** 글쎄, 제가 그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한말씀 올리면요 지금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조선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 다 알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 모든 조간신문을 보면 ‘서두르지 마라. 신중하게 하자, 미국하고’.

알래스카 LNG 안 한다고 했잖아요, 부총리.

○**증인 최상목** 예, 저희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증인 최상목** 예.

○**박지원 위원** 심지어 일본 총리도 협상을 하되 신중하게 한다.

○**증인 최상목**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잖아요.

○**증인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증인 최상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박지원 위원** 그걸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적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비웃던 데 오늘 아침에 사설들 칼럼들 다 그러잖아요, ‘다음 정부에서 협상하라’.

○**증인 최상목**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더라도 민주당과 통합 협상을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통령후보 놀이 하고 대통령 놀이 하면 되겠어요? 한덕수 대행이 가서, 기아자동차 갔으니까 해결돼요? 조선 갔으니까 해결돼요? 그러면 안 된

다 이거예요.

그 A4용지 보신 분들 전부, F4 다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가에 회동한 사람 이 사람도 다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도 핸드폰 다 바꾸고 당신들도 다 바꿨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박지원 위원 기재부차관보, 1급 회의에 부총리 할 때 들어갔지요?

○증인 윤인대 예, 배석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때 F4 상세히 보고, 논의했지요?

○증인 윤인대 쪽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논의가 없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쪽지냐고, 이게.

○증인 윤인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기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증인 윤인대 위원님, 저 말고도 배석자가 더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더 확인하셔도 됩니다.

○박지원 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희승 위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을 누가 이렇게 흥분시켰습니까. 제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설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일 동안 추천 의뢰조차 안 했어요. 특검 임명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강행규정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개념을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지체 없이는 통상 3일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는 의견을 전에 밝힌 적이 있고.

법제처장님,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 개념입니까?

○증인 이완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필요한 지체 없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희승 위원 통상 3일 정도 그런 개념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88일 동안 임명하지 않은 건 누가 봐도 지체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요청했지만 임명 안 된 검사가 7명입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

명 중 11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면직권, 심지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뒷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는 뇌물죄, 공갈죄, 직무유기 등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과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하는 이런 행태 아주 부적절합니다.

최상목 증인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란 세력에 대한 적극적 비호일 뿐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형법상으로도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스스로 그 답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주 충실의무 의견은 지금도 그대로 견지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된 균형 있는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그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이창용 총재님, F4 회의 할 때 최상목 부총리께서 오셔서 사의를 표명을 했다 했었는데 아마 이창용 총재께서 만류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증인 이창용** 처음 저희가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신 것 같았고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시겠다는 말씀 하셔서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만두시더라도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마 이창용 총재의 조언에 따라서 사의를 번복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있는데 국무총리 이하 내각,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게 주는 신뢰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바로 사의를 표명해서 경제 수장이 없어진다면 사실은 외국에서 한국의 경제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재께서 보시기에 현 단계에서 만일 경제부총리가 탄핵 결정이 돼서 탄핵소추가 된다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창용** 매우 정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팩트로만 생각하면 그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은 부총리가 사실은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외국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되지 않은 사소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부총리를 탄핵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 정쟁 속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시키는 이런 나라라면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누가 보든지 그렇다고 봅니다. 비상계엄

은 끝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속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으로서 하는 역할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또 탄핵을 한다? 이런 나라를 외국에서 본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끝없이 어려워지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대응해야 될 경제부총리는 탄핵을 한다? 이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만들고 비난을 하고 인격적 모욕을 주고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최상목 부총리 입장이라도 그 당시에 사의를 내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책임감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최상목 부총리, 갖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미국채로 전환한 거다, 그랬으니까 환율 차익은 어차피 다 달러로 갖고 있든 미국채든 다 환율의 영향을 받으니까 변환에 따른, 매입에 따른 환율 차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오셔 가지고 그때 갖고 있던 그 당시의 미국채를 팔겠다고 했고 실제로 팔았지 않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박범계 위원 왜 팔았습니까?

○증인 최상목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랑 약간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왜 팔았어요?

○증인 최상목 아니, 그래서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제가 팔겠다고……

○박범계 위원 환율 방어와 안정을 기치로 해야 될 경제부총리가 될 사람이 미국채를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서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최상목 저는 동의……

○박범계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증인 최상목 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팔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그거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또 했어요. 아무리 달러를 가지고 국채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불과 6~7개월 전에 팔았던 그 국채 매도 행위와 정반대의, 다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전환해서 미국채를 산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인사청문위원,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국회를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지요.

왜 그랬을까? 최상목이 왜 그랬을까?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은 이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주 업무 주체예요. 기재부장관이 왜 그랬을까? 시장에 대한 사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나는 미국에 충성한다 그 정도일까? 중국은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미국채를 팔고 있는데, 일본도 전략적인 관계니까 왕창은 못 팔지만 팔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 정부는 재정 파탄이 눈앞에 코이고 그 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는 물론이고 국채를 마구 발행해 가지고 전

세계에 팔려 다니는데 그때 최상목 장관이 사 쳤다, 기재부장관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그 점, 환율을 안정시키고 환율을 방어해야 되고 어쩌면 갖고 있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국채를 가지고 어쩌면 미국과 담판을 짓든지 정책의 수단으로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되는 그 수단을 거꾸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 파는데 나는 산다, 나 미국 정부에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자, 여러분 미국채 사 주십시오. 이것이 한국 경제정책의 수장이 한 짓입니다. 조금이라도 반성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최상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만약에 답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면 정말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오늘 밤새도록 할 거예요. 해 보십시오.

○**증인 최상목**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의 무게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들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기 위했다면 끝까지 연 말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팔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다시 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평계를 맨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추천을 한 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결과인데.

어떻든 간에 그건 어차피 제 이름으로 산 거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상충이나 어떤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행동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송구스럽지 않아요?

○**증인 최상목** 예?

○**위원장 정철래** 정리해 주시지요.

○**박범계 위원** 송구스럽지 않아요?

○**유상범 위원** 충분히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겠다는 결로 답을 했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뭘.

○**서영교 위원** 말을 빙빙 돌려요, 사과하지.

○**박지원 위원** 송구스럽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서영교 위원** 사과하면 되지 말을 빙빙 돌려.

○**위원장 정철래**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박지원 위원** 무슨 설명이 그렇게 많아.

○**위원장 정철래** 정리해 주시고요.

○**유상범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게 답했네요.

○위원장 정청래 자,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도 3분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 현재의 윤석열 파면 판결문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예, 그……

○위원장 정청래 114페이지.

○증인 최상목 114페이지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증인 최상목 예.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은 들으셨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변명했던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 아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피해가 없었다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과 시민들 덕분이었다’ 이 판결문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증인 최상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좋습니다.

‘핵심 쟁점 다섯 가지, 계엄의 조건, 포고령, 국회 침탈, 중앙선관위 침탈 그리고 법관에 대한 체포, 이 부분 모두 위헌이다’라고 판결한 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 최상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이 변명했던 예산을 깎았다 하는 부분은 평계가 될 수 없다. 12월 3일 날은 2023년도·2024년도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지 2025년도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설령 2025년도 예산이 주장대로 잘못돼 편성되어 있을지라도 12월 3일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 현재가 이렇게 판결한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여야 합의로 이런 부분을 삭감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거대 야당이 깎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따라서 그것이 비상계엄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최상목 예.

○위원장 정청래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이 야간통행 금지를 빼다 해서 이것은 집행할 목적이 없다라고 변명하였으나 야간통행 금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려고 했다’라고 판결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최상목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소추한 다섯 가지 핵심 쟁점 100% 탄핵이고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라고 판결한 것도 그러면 인정하고 계시지요?

○증인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다면 거기에 적어도 주동적으로 중요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화수행한 죄는 있다고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도의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위원장 정청래 부화수행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증인 최상목 예, 그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경제 수장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영향을 끼치면 대통령이 영향력이 더 있어요, 경제 수장이 더 영향력 있어요?

○증인 최상목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리고 핵심 쟁점 다섯 가지가 다 위헌 판정 받은 게 국가적으로 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증인 최상목 예.

○위원장 정청래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재보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상범 위원 잠깐만 조정합시다.

○박범계 위원 뭘 조정해.

○송석준 위원 본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약식으로 하시지요, 바쁘신 분들이니까. 내일 또 회의도 많고 그런데.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참석하신 분들 또 볼일도 보시고 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하고요.

간사님들끼리 몇 분씩 하실 건지 사람, 제가 봤을 때는 한 2명씩 하든가 3명씩 하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 신문은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박은정 위원님까지 총 여섯 분으로 하시고 신문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이완규 증인님!

○증인 이완규 예.

○송석준 위원 요즘 많이 어려우시지요?

○증인 이완규 예, 말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정당한 모든 자격을 갖춘 이런 분이 추천됐는데 왜 이렇게 공격들을 많이 하는지,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은커녕 오히려 이렇게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하시고 존경받는 법조인이신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추천됐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당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사위,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 30회에 이르는 탄핵의 남발, 이것이 갖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최근에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토킹범죄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행위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바라만 봐도 그게 벌이 될 수 있고 실제 처벌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헌법이 정하는 헌법기관들, 고위공직자를 잘못이 있다고 파면하는 아주 최고의 무서운 처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서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방탄탄핵을 넘어서 출탄핵, 심지어 총탄핵으로 겁박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탄핵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 주장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이렇게 청문회까지 친절하게가 아니고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모셔 놓고 탄핵을 하겠다고 청문회를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일 겁니다.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잘못해서 직권남용되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직권남용죄, 형법 112조에 의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직권남용죄, 그 무수한 30회에 걸친 탄핵을 추진하면서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직권남용에 대해서 국회에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완규 증인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완규 글쎄요, 탄핵소추라는 것은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 행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이 다른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해 갑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환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증인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IMF 가실 때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공직자 신분이었어요?

○증인 이창용 민간인이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투자해도 되지요?

○증인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지금 한국은행 총재로서 미국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 이창용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외환보유고 관리하는 한국은행이지요?

○증인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통화정책 하고 있지요?

○증인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금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고환율을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국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로? 영향을 받지요, 자기 재산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충돌에 지금 되게 민감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인 이창용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까 투자했다고 거들던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 아닙니다.

두 번째, 2024년 노벨경제학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포용적 정치제도하고 포용적 경제제도가 만났을 때 경제성장의 길이 열린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뭡니까, 근간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증인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민주주의 무너졌지요?

PPT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들이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원·달러 환율, 달러인덱스하고 동조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동조화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아직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정치·경제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주의자 생각이에요. 고전주의자 생각이에요. 그 이전 고전주의자는 정치·경제 같아했어요. 정치 속에 경제 있고 경제와 정치가 같이 만나는 겁니다. 동떨어져서 어떻게 경제가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율도 이렇게 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인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금융시장, 아까 제가 투자자 손해 얘기했잖아요, 114조. 지금 서민들의 눈먼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비상계엄 하나로. 최소한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재부장관, 또 하나 얘기 좀 할게요, 관세협상 관련해서.

관세협상, FTA협정처럼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예요. 혹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총리나 지금의 기재부장관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다. 어차피 상호관세 90일 연장했으니 50일 뒤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나온다. 그때까지만 제발 협상을 미뤄 줬으면 좋겠다’ 트럼프하고 그렇게 얘기 했다고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저희가 협상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서 그때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저희가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환 위원** 준비만 하세요. 준비만 하시면 돼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최상목 부총리님!

○**증인 최상목** 예.

○**곽규택 위원** 민주당에서 지금 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3월 21일이었습니다. 맞지요?

○**증인 최상목**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 탄핵소추하는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던데 10년 정도 지난 사안인 것 같아요. 미르재단 관련해 가지고 혐의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참고인으로 조사 한 번 받으신 적 있지요?

○**증인 최상목** 예, 참고인이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이후에 조사는 한 번 정도로 끝났고……

○**증인 최상목** 예, 그 건은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결국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종결된 사안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이것을 또 탄핵소추 발의한 날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하기 직전에 드럼통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혐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최상목 부총리, 이 말 언론 보도 통해서 들으셨지요?

○**증인 최상목** 예, 봤습니다.

○**곽규택 위원** 당시 느낌이 어땠나요?

○**증인 최상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청문회 때도 그런 부분에, 그 장면에 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고발하신 내용으로 다 무죄와 그다음에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이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에다가 10년 전의 혐의점 발견되지 않았던 사안까지 새로 고발을 한 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고요. ‘몸조심하라’ 이러면서 선동을 하고요. 지금 이런 세력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권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증인들께서 정말 몸조심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오늘로써 딱 서른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거든요. 오전에 한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가지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탄핵소추안 발의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지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사자한테 미치는 기본권 침해가 훨씬 큰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내재적 한계 다 무시하고 서른 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했고요, 또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하고 수사까지 지금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정리합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을 탄핵소추하는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첫째 12·3 내란에 관련되어 있다, 둘째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대법원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했다. 이 내용은 모두 다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마용주 대법관후보자를 임명 거부했다. 이것도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불이행했다.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다. 맞습니까, 최상목 장관?

○**증인 최상목**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맞지요? 그러면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는 했지요, 계속? 그 걱정이 있었지요?

○**증인 최상목** 걱정보다는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했는데 어떻든 임명이 되지 않았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직도 쪽지입니까? 아니지요?

○**증인 최상목** 제가 받았을 때 쪽지 상태로 받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이건 쪽지가 아니고요.

이것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증인 최상목** 옆에 어떤 실무자가 건네줬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누가 건네줬는지 확인을 안 해요?

○**증인 최상목** 예, 뭐……

○**서영교 위원** 왜 의도적으로 확인을 안 하지요? 누가 건네줬는지, 누가 이 불법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이 위헌을 하게 되었는지 지적하려면 누가 건네줬는지 알아야지요. 누가 건네줬겠어요?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날 대통령과 장관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윤석열이 건넸습니까?

○**증인 최상목** 실무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실무자?

○**증인 최상목** 예.

○**서영교 위원** 실무자가 누구예요?

○**증인 최상목**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잘 모르겠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기재부장관을 해요?

다시 또 하나 물을게요. 경제가 33개월 연속 마이너스, 내수경제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경제 수장으로 제대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체가 답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탄핵’ ‘탄핵’ 이야기하면서 방어를 하는데요 제가 정리할게요.

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이다. 이익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파면한다.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파면하고 나라가 안정됐어요. 인정하지요? 김용현 국방부장관 없음으로써 국방부차관이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아주 잘해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없음으로 잘해요. 그러면 이제 기재부장관이 없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는 살아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시점에 대통령이 없음으로써, 행안부장관이 없음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없음으로써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고 있는데 33개월 내내 마이너스성장을 이끌어 온 기재부장관, 여러 가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탄핵함으로써 얻는 그 이익이 손실보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화면 좀 옮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창용 총재님, 이게 지금 최근 20년간 미국채 30년물 수익률인데요. 보통 경제 교과서에서 미국채는 경제위기에 강한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보시지요. 화면에 보이는 채권수익률이 쭉 빠지는 시기, 미국채로 돈을 버는 시기는 모두 경제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가 미국채로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창용 예, 어느 쪽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박은정 위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시계열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채 30년 수익률입니다. 1997년 세계경제가 한번 휘청이면서 수익률이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때 총재님 언제였습니까, 97년도?

○증인 이창용 97년 12월부터 외환위기가 있었던……

○박은정 위원 예, 바로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총재님, 당시 학계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창용 예.

○박은정 위원 IMF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적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시지요?

○증인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저런 국가부도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경제와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장이, 어느 정무직 공직자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미리 알고 미국채를 선취매해서 국가 위기상황에 혼자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었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총재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가구당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이창용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1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위기를 예상해서 수억 원어치 미국채를 턱턱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당선과 관세 전쟁,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충격을 예상하거나 미리 알고서 가지고 있는 자산 이상의 미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국내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한민국 종시 하락과 경제위기에 1억 9700만 원을 베팅한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이창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부총리가 말씀하셨듯이 달러 자산을 바꿨기 때문에 환율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환율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무게를 느낀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부적절한 행위 아닙니까?

○증인 이창용 의심을 살 수 있는, 부적절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의심을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지원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

○증인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청문 신청서 냈어요, 자료? 청문회 보고.

○증인 이완규 아직 안 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직 안 냈어요?

○증인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발표만 봤어요? 지명받았잖아요, 7일 날, 8일 날.

○증인 이완규 지금 현재로써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도 진행 중이고 해서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게 말이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꼼수를 하는 거예요. 법제처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7일 날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했지요, 8일 날?

○증인 이완규 7일 날 통보……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관례가 지명받으면 청문보고서 내고 청문보고서 통과되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덕수 측에서 ‘발표만 했고 지명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증인 이완규 그 부분은 제가 잘……

○박지원 위원 판결 요건이 안 된다 이거지요, 발표만 했는데. 청문보고서도 안 내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완규 청문보고서를 안 내게 된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명은 받은 거예요?

○증인 이완규 어쨌든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된다고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박지원 위원 지금 신분이 후보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뭐예요, 한덕수 대행?

○증인 이완규 글쎄요,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박지원 위원 이분이요, 한덕수 대행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통령 나오는 것 좋아요. 대행이니까 대통령 놀이 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국회도 무시하고 관세 협상을 위해서 자동차 공장, 오늘은 조선소. 내일은 안 갈 거예요, 국회 질문 끝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말장난 아니에요? 발표만 하고 지명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염연히 내가 후보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명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관례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문 요건 서류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완규 자세한 상황은 어쨌든 저도……

○박지원 위원 얼버무리지 말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인 이완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지금 청문요청서가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완규 쳐장님!

○증인 이완규 예.

○위원장 정청래 ‘호명한다’ 그러면 ‘호명’이 무슨 뜻이에요?

○증인 이완규 불러서 뭐……

○위원장 정청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지요?

○증인 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완규 법제처장님!’ 이렇게 하면 제가 호명한 거예요. 맞지요?

○증인 이완규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지명’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명’은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한덕수 대행이 ‘아, 다음 헌법재판관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완규 또 무슨 함판사 이 사람이다’라고 지정한 거예요. 그게 지명이에요. 이거는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명됐다는 것을 통보받은 거예요, 이완규 처장.

그런데 임명은 또 다르지요.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네 마네 하다가도 시간 지나면 윤석열처럼 임명, 그때 임명하는 거예요. 아직은 임명 전 단계 그리고 지명인 상태인 거잖아요.

이완규 처장!

○증인 이완규 어쨌든 저는……

○위원장 정청래 한국 사람이라면 제가 말한 거를 다 이해를 하겠지요?

○증인 이완규 예, 뭐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위원장 정청래 본인도 이해하지요?

○증인 이완규 예, 어떻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지명 상태예요, 지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가치·정신 이런 부분을 이전의 헌법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돼 있고 국정감사가 부활했고 그리고 국회 해산권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군부독재를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헌법 5조에 ‘국군은 국가 안전의 보장과 국가 방어의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이런 부분을 일부러 넣었고요. 86조 3항, 87조 4항에 의해서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77조 3항, 4항 등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해서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정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의 헌법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헌법이 저는 정교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헌법을 파괴했을 때는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또 하나의 역사적 교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그렇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누구라도 헌법 차원에서의 당연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반헌법적인 세력이 엄존하

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최상목 증인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상목 장관님,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최상목 장관께서 혹시 못 한 발언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상목**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많은 국무위원들, 공직자들의 시간을 사실 뺏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요 제가 자신이,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청문회니까 사정이나 제가 그 당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직을 지금 40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공직에 있어서 제가 약간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저의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드린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저한테 주어진 것, 민생 안정과 우리 국민들 경제의 어려움을 좀 덜어 드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 여러 분 주셨지만 미국과의 어떤 관세협상 부분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 국익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는 작업은, 어차피 여기 있는 공직자들은 또 새 정부가 가도 다 같이 일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의 공직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어쨌든 간에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신뢰를 얻게 되면 결국 국익에 도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주 파이널한 결정은 또 새 정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준비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됐고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 수장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5시까지는 마치고 돌려보내서 업무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 드리고, 지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고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되는 대로 속개 시간은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참고인 명단

참고인(1인)

성명	직업	사유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현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영환 김용민 박균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 ○출석 증인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김병환(금융위원장)  
 윤인대(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  
 박현수(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이완규(법제처장)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

#### ○출석 참고인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